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26
2025.4.14.

■ 판례 동향

감면물품 사후관리
부실 등이 감면부적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품목분류 동향

친환경의 중심
바이오연료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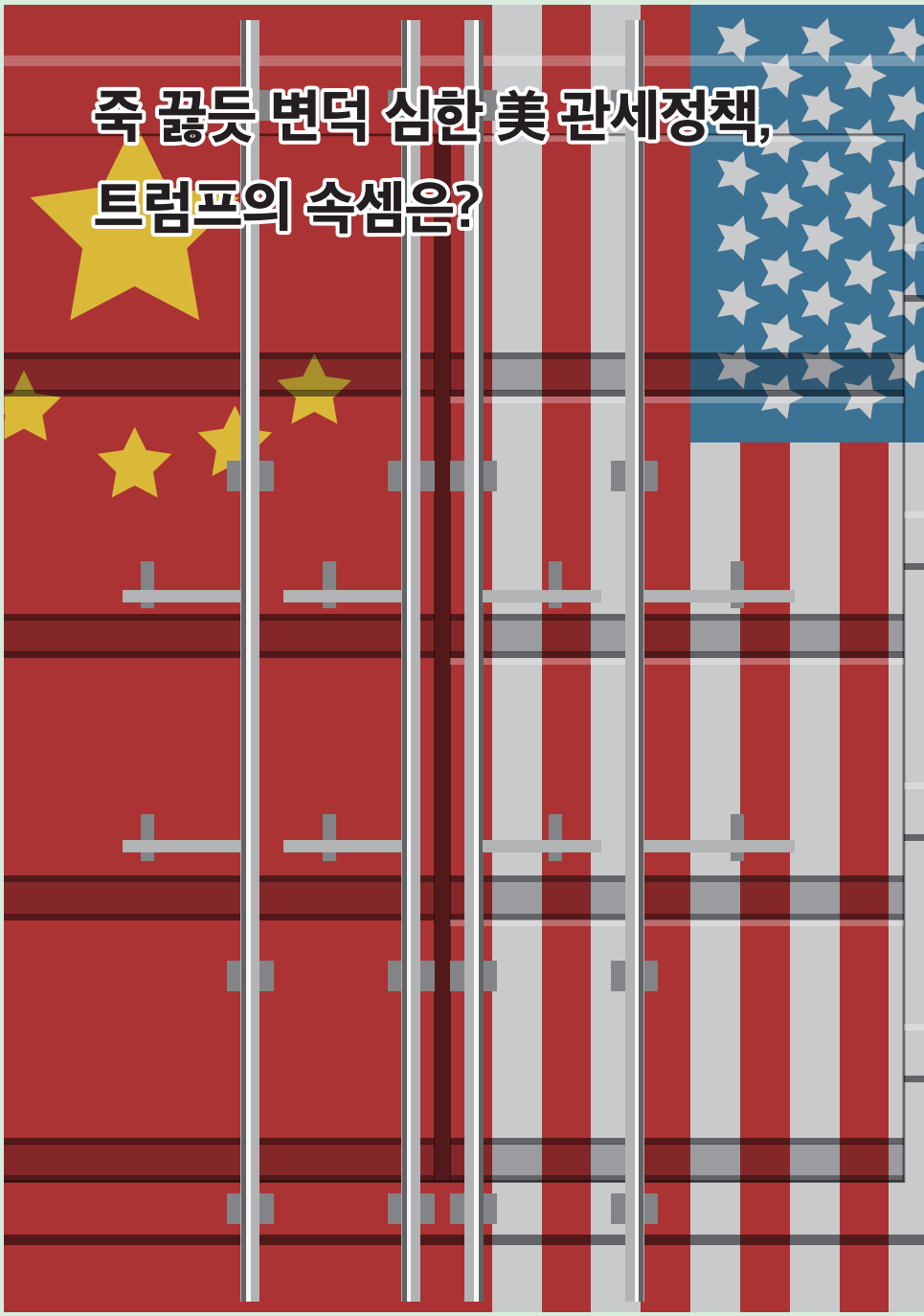

죽 끓듯 변덕 심한 美 관세정책, 트럼프의 속셈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9 771279 972500 8
ISSN 2799-7251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최흥식

총 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인 쇄 경성문화사

배 포 (주)아림디엠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5년 4월 14일(통권 제2126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죽 끓듯 변덕 심한 美 관세정책, 트럼프의 속셈은?

06 Weekly News

12 전문가 칼럼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대표(전문연구원)

16 현장특파원

관세행정실무해설

22 **관세행정안내**

제3국에서 일부 생산이 이뤄진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2 **질의응답사례**

항온항습기의 HS Code

판례동향

35 **관세판례해설**

감면물품 사후관리 부실 등이 감면부적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동향

53 **품목분류해설**

친환경의 중심 바이오연료의 품목분류

68 **세번 바로잡기**

플라스틱 사무용품

70 **상식 밖의 상품학**

산불 진화에 인공강우 도입은?

최신개정법령

72 **공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

76 **입법예고**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죽 끓듯 변덕 심한 美 관세정책, 트럼프의 속셈은?

중국만 제외한 추가관세 90일 유예, 美·中 패권전쟁 서막되나

미국의 관세정책이 또 뒤집혔다. 당장 25%의 상호관세 부과 대신 90일간 관세유예를 선언하고 보복관세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국가에는 협상을, 맞대응 국가에는 관세폭탄을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4월 9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율(25%) 부과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이다.

트럼프의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된 이번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상호관세는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다만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25%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유예국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중국은 145%(4. 10. 기준)라는 고율의 관세를 떠안았다.

美·中 상호 자존심 건 치킨게임의 서막일까?

트럼프는 對중국 고세율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트럼프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에서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4월 9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전 세계 국가에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별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이날부터 중국은 기존에 부과했던 20% 추가 관세에 84%를 더한 104%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다음날인 10일부터 모든 미국産 수입품에 84% 관세 부과 맞대응에 나섰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맞받아치며 對中 관세율을 125%까지 높였다. 여기에 펜타닐 문제로 지난 2월 부과됐던 20%까지 더해져 최종 145% 관세를 부과하며 치킨게임에 돌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4월 9일 '中·美 경제무역관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관한 백서를 통해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

백서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정상적인 中·美 경제무역 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의 전반적 시행에 대해 "관세 및 기타 조치를 위협하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4월 10일 중국 상무부 허융첸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압박과 위협, 협박은 중국과 올바른 거래방식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협상을 위한 관세 조치'로 변화 조짐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무관용을 주장하던 백악관의 이번 변화에 대해 트럼프가 각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 들이려는 전략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만 제외한 이번 관세유예로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10%의 관세가, 협상테이블을 거부하면 125%(4. 9. 기준)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그동안 관세 조치가 협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백악관이 최근 들어 교역국과의 협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TruthSocial)'을 통해 "75개국 이상이 무역,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 등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며, "이 국가들이 미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맞불관세를 밝힌 중국에 대해서는 1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밝혔다. 트럼프의 이번 발표 직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국제무역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반면, 중국은 정반대 노선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함에 따라 20% 관세를 일괄 부과받은 유럽연합(EU)은 미국産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추가적인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는 즉각 미국에 협상 의사를 전했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깊은 유감을 표현하고 관세 면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도는 보복이 아닌 협상에 집중할 것을, 대만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형태의 무관세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46%의 세율을 부과받은 베트남은 美 측에 對美 관세 0으로 인하 의사를 타진했으며 트럼프도 긍정적으로 답해 양국 간 관세 긴장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유럽국가 중 독일과 프랑스는 보복을 선언했지만 영국, 스위스는 협상을 택했다.

상호관세 유예 ··· 중국 고립 위한 미국의 포석

미국의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은 4월 10일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90일간 관세를 유예한 것을 두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을 표적으로 삼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구하면서 중국에 최대의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에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부 국가에서도 보복관세를 예고했으나 미국은 중국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봐 설득력이 있다.

중국은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직면한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을 끌어들여 미국에 저항할 연대를 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이후 각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여 중국의 반격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하구현 기자 |

美 자동차 관세 충격 대응 긴급 유동성·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정부, 자동차 생태계 강화 위한 긴급 대응책 발표

對美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의 미국發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자금이 투입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8일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은 한국의 對美 수출 1위 품목으로 작년 한 해에만 자동차 347억 달러, 자동차부품 82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나 美 정부의 25%의 관세 부과 품목에 해당돼 미국 내 경쟁력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이 같은 기업의 경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 원을 추가 공급해 기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은 금융권 등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과 보증, 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 연장되고,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우선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연내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연내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을 당초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의 수출 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용 선복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中, 디스프로슘·이트륨·사마륨 등 희토류 7종 수출 통제 품목 포함

당장 업계 영향 적으나 수출허가에 수일 소요돼 면밀한 대응 필요

중국이 흑연, 갈륨에 이어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했다. 우리 업계는 기존 재고량과 대체재 등을 통해 당장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수입에 장시간이 소요돼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상무부가 4월 4일 밝힌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하고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중국 수출 통제는 희토류 17종 중 7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희토류 7종은 코발트 자석에 쓰이는 사마륨,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형광체 원료인 테르븀,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에 쓰이는 이트륨이다.

이번 중국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법정시한은 45일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수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촉매제로 사용되는 루테륨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구 자석용 테르븀은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영구자석 첨가제인 사마륨, 합금첨가제 스칸듐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어 이번 수출통제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다만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으며, 소량이지만 다양한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수출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 韓·中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중국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하기로 했다"며, "특히 희토류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용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 마약 합동단속작전 아·태지역으로 확대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세관당국의 마약 단속 전문가들이 마약밀수 수법을 공유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관세청은 4월 8일부터 사흘간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멕시코發 선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톤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중남미發 마약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태국·미얀마·라오스 중심의 마약생산지 골든 트라이앵글에 더해지며 마약 공급 경로에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번 워크숍은 암호화폐, 다크웹, 3D 프린팅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마약 은닉수법이 급증하는 가운데 역내 마약 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 등 아·태지역 12개 세관당국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해 최신 밀수 동향과 단속 기법을 공유했다.

워크숍에서는 ▲WCO의 정보 공유 플랫폼(CEN)을 활용한 단속 기법, ▲신종 마약류 분석 사례, ▲탐지견 활용법 등 실무 중심의 세션이 진행됐다. 아울러 작년 실시한 한·ASEAN 마약 합동단속 결과도 공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 합동단속 이후 최근 3년간 평균 적발 건수는 연 779건, 적발 중량은 727kg으로, 이전 3년 대비 중량 기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대량 밀수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태국發 항공 특송화물에서 필로폰 혼합정제 야바(Yaba) 4만 5,371정이 가방 완제품으로 위장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마약 합동단속 작전 범위를 아·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서 기른 비육마 30마리 일본으로 첫 수출

제주에서 사육된 비육마(고기용 말)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주도 비육마 30마리의 검역을 4월 6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말은 비육마용으로 도입된 벨지안과 페르숑 교잡말로 고기 품질과 마블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으로 말 수출검역 현황을 살펴보면 경주마는 35두이지만, 비육마의 수출실적은 없다. 비육마는 2015년 국내 말전염성자궁염 발생으로 일본 수출이 금지됐으나, 작년 11월 8일 '수출위생조건 및 수출검역증명서'가 개정되며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역본부는 수출 검역 기간 30일, 국가 및 지역 내 말 질병 비발생, 백신접종, 진드기구제 등 일본의 검역 기준에 맞게 30일간 비육마에 대한 수출 검역을 하면서, 민관합동전담(TF)팀을 운영해 제주도청·부산세관·한국마사회(제주) 등과 원활한 수출을 위해 협력했다.

고경봉 제주지역본부장은 "정부와 업체가 함께 비육마 주요 수입국인 일본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수출 검역 지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줄인다

물류비 EMS 대비 60% 이상 할인, 풀필먼트는 최대 2,500만원 지원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 중소기업이 많은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물류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이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9일부터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물류비 상시 할인,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풀필먼트는 아마존 주문처리(FBA, Fulfillment by Amazon)가 대표적으로, 물류사 또는 플랫폼사가 판매자 대신 주문에 맞춰 제품을 보관·포장하고 소비자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물류서비스를 말한다.

수출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택배 발송 건에 대해 물류사와 단가 협상이 쉽지 않아 물류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있었다. 중기부가 마련한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집적함으로써 EMS(우체국 국제특송) 정상가 대비 평균 60% 이상 저렴한 물류단가(2024년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가 상위 10개사 기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전년도(2024년) 수출실적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풀필먼트 지원 사업은 글로벌 유통사의 물류 창고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개방하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특화된 현지 풀필먼트 서비스(아마존 FBA, 쇼피 SBS 등) 이용료, 수출 통관 및 신고대행비 등 제반 비용의 약 70%를 기업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물류비용과 복잡한 물류과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물류 부담의 완화를 덜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아 올해 약 1,300여 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으로 지원된 수출 물량은 약 396만 건으로 EMS 정상가 대비 평균 83.4% 할인된 단가로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 수요를 반영해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기준 전체 물량처리 실적 중 美·中·日 3국의 합계가 97.7%로 3국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초보, 유망, 성장, 강소 기업으로 구분해 단계별 풀필먼트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

중기부의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참가 신청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에서 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작년 우리 경제, 반도체·자동차 중심 수출이 이끌어

2024년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이 1.93%p 기여, GDP서 수출 비중도 36.3%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하며 한국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월 9일 발표한 '2024년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의 기여도는 1.93%p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6.3%로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2024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8,699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했으며, 수출액은 6,836억 달러로 세계 6위에 해당했다. 이 같은 성장은 수출 단가와 물량의 동반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반도체 수출이 42.4% 증가하며 전체 수출 성장의 82.5%를 견인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91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2023년 대비 0.8% 감소했고, 석탄 및 석유제품, 기초화학물질 등의 수출도 각각 3.4%, 12.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의 자체 생산 확대 등의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4%로 집계됐다. 이 중 수출의 기여도가 1.93%p로 나타나 경제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기여도로, 내수 침체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년 수출의 생산유발 효과는 2023년 대비 6.9% 증가한 1조 3,012억 달러로 분석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큰 역할을 했으며, 자동차 수출은 2,365억 달러, 반도체 수출은 1,854억 달러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나타냈다. 전체 수출의 생산유발도는 1.90으로, 수출 1달러당 약 1.90달러의 생산이 유발되는 구조를 보였다.

총수출이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은 56.3%로 2023년 대비 0.9%p 상승했다. 품목별 부가가치 유발액은 반도체가 789억 달러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 579억 달러, 일반목적용 기계 225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 수는 총 416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858만 명의 1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수출 100만 달러당 6.1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취업 유발 인원이 69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도체 34만 6,000명, 일반목적용 기계 29만 2,000명, 선박 22만 9,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유서경 수석연구원은 "수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검역본부, 압수 농산물 퇴비화해 농가 무상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가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을 퇴비화해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4월 9일 중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압수한 농산물은 중국産 건대추, 땅콩, 녹두 등 33톤으로 시가 9억 원 상당에 달한다.

압수된 물품은 올해 1월 설 명절 국경검역 강화 기간 중 불법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 「식물방역법」상 퇴비화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중부지역본부는 환경오염 방지, 예산 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압수한 물품을 소각하는 대신 퇴비화해 활용하기로 했다.

8월부터 대마 등 마약류 해외 직구 식품 집중검사

올해 8월까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기획검사가 실시된다.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해당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직구 식품 등에 대한 의무 검사를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올해 3월 개정하는 한편,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세청 인사]

■ 서기관 승진 (2025년 4월 11일자)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송 기 웅**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 익 재**
관세청 운영지원과 **정 우 용**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허 범 석**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박 찬 형**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윤 재 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김 다 사 롬**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전 병 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김 헌 주**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류 승 하**
관세청 심사정책과 **정 연 우**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조 점 술**
부산세관 통관총괄과 **남 창 훈**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오 성 호**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김 현**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2025년 4월 11일자)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김 영 희**

"1기 때와 다르다" 美와 관세 전면전 택한 중국 현지 반응 및 대응



박 진 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대표(전문연구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쳐 중국産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총 20%). 또한 4월 2일(현지시각)에는 60여 개 국가에 각기 다른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중 중국에는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4월 8일 기준 다시 對중국 관세를 50% 추가하는 등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연이어 발표했다.

● 미국의 對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조치(4. 9. 기준) ●

미국	중국
[2025. 2. 1.] 중국産 수입품에 10% 관세 추가 부과(2. 4. 시행)	[2025. 2. 4.] - 미국産 일부 수입품에 10~15% 관세 추가 부과(2. 10. 시행) : ▲석탄, LNG 등 8개 품목에 15% 관세 부과,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 10% 관세 부과 - 텅스텐, 텔루늄, 비스무트 등 25개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시행 - 미국 기업 PVH,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에 포함 - 미국 기업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
[2025. 2. 27.] 중국産 수입품에 10% 관세 추가 부과(3. 4. 시행)	[2025. 3. 4.] - 미국産 일부 수입품에 10~15% 관세 추가 부과(3. 10. 시행) :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15% 관세 부과,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에 10% 관세 부과 - 레이도스 등 미국 방산업체 15개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용 물자) 수출 금지 - 티콤 등 미국 방산업체 10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에 포함 - 일루미나의 對중국 유전자 시퀀서 수출 금지 -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
[2025. 4. 2.] 중국産 수입품에 34% 상호관세 부과(4. 9. 시행)	[2025. 4. 4.] - 미국産 수입품에 34% 관세 추가 부과(4. 10. 시행) -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시행 -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 등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 미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디오 등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에 포함 - 미국 기업 듀폰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 미국·인도産 CT용 X선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 아메리칸 프로틴, 미국 C&D 등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개 수출 자격 정지

미국	중국
[2025. 4. 8.] 중국産 수입품에 50% 관세 추가 부과(4. 9. 시행)	[2025. 4. 9.] - 미국産 수입품에 50% 관세 추가 부과(4. 10. 시행; 4. 4. 조치와 합하면 총 84% 관세가 추가됨)

자료 : 新华网(2025. 3. 4.),「我国自3月10日起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 박민숙(2025. 2. 20.), '트럼프 2기 행정부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 아주경제(2025. 4. 4.), '中, 美에 신속한 보복 … 34% 관세·희토류 통제·듀퐁 반독점조사까지' 등을 참고해 작성.

중국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맞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對중국 첫 추가 관세가 발효된 2월 4일, 중국정부는 미국産 석탄, LNG, 원유 및 농기계 등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두 번째 對중국 추가 관세가 발효된 3월 4일에는 미국産 닭고기, 밀, 옥수수 등 일부 육류 및 농수산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4월 미국이 34%의 상호관세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즉각 미국産 수입품에 34%, 50%의 동일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했다.

이 외에도 중국은 텅스텐 등 핵심광물의 對미국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대표 의류브랜드인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의 모기업 PVH, 세계 최대 유전자분석장비업체 일루미나 등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에 포함해 이들 기업의 對중국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는 등 비관세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보복관세를 넘어서 다양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 시행된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에서 명시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현지 반응 "맞대응 시의적절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對중국 관세 부과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 ASEAN 국가에도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을 중국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카드로 틱톡(TikTok) 사업권 매각 등을 언급하는 행위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단순히 무역 문제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중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이 올해 8~10% 감소할 수 있고 이러한 수출 급감이 중국 기업의 고용 및 근로자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가 하락한다면, 중국 GDP 성장률이 1~1.5%p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1)]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에 비해 중국이 美·中 무역분쟁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관세 조치의 타격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본다.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의 가오젠(高健)은 지난 2월 미국의 첫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맞대응이 매우 시의적절했다면서 중국은

1) 中国首席经济学家论坛(2025. 4. 8.), '连平 : "对等关税"对中国经济影响几何？怎样应对？'; 金融界(2025. 4. 7.), '关税大战升级，对经济、投资有何影响？机构解读'.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늘었으며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평가했다. 푸단대 중국연구원의 장웨이웨이(张维为) 원장도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전쟁', '과학기술전쟁' 등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구조개혁을 통해 무역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등의 준비를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중국이 즉각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2만 8,000자 분량의 백서[2]를 공표한 배경에는 무역 다변화 노력으로 트럼프 1기 시절에 비해 중국의 對미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20% → 15%), 동남아·중남미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수출 비중은 늘어난 것(2014년 26% → 2024년 50%) 등을 볼 때 그동안 중국정부가 준비를 철저히 해왔음을 알 수 있다.[3]

또한 중국 전문가들은 對중국 관세 부과 조치로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런민대 금융연구원 왕원(王文) 원장은 중국産 전자제품, 가구, 섬유 등의 대체품을 찾기 어렵기에 미국이 이들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는다면 가격과 품질 조건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중국 창장상학원의 리웨이(李伟) 교수는 관세 부과가 미국의 물가를 더욱 상승시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상무부 국제무역협력연구원의 장젠핑(張建平) 부주임은 미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5년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발생한 비용의 92%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스스로를 해하게 될 것이라 평했다.[4]

향후 전망 "끝까지 대응하되 미국 의존도 낮출 것"

중국 상무부는 4월 9일 백서에 관해 설명하면서 "미국이 경제무역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면 중국은 확고한 의지와 풍부한 수단으로 단호히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동시에 "중국은 美·中 경제무역 주요 이슈에 대해 미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5]

이를 토대로 보면 중국정부는 미국이 관세 조치를 강화한다면 강경히 맞대응할 것이나, 트럼프

2) '중미무역관계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国务院新闻办公室(2025. 4. 9.), '《关于中美经贸关系若干问题的中方立场》白皮书'.
3) 复旦大学中国研究院院(2025. 2. 5.), '张维为教授就中美"贸易战"接受《纽约时报》、凤凰卫视采访'; 中国首席经济学家论坛(2025. 4. 8.), '连平：对等关税"对中国经济影响几何？怎样应对？'.
4) 澎湃新闻(2025. 3. 26.), '李伟教授:特朗普关税战——市场"蝴蝶效应",中国如何应对?'；人大重阳(2024. 11. 28.), '凤凰专访：应对特朗普，中国比八年前更有经验了'; 中国日报网(2024. 12. 3.), '学者：美国智库数据证明美打贸易战害人害己'.
5) 중국 언론은 중국정부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조치로 ▲미국産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미국産 가금육 수입금지, ▲펜타닐 협력 중단, ▲미국의 對중국 서비스 무역 제한, ▲중국 내 미국 기업 조사, ▲미국 영화 수입 금지 등을 거론하고 있음. 조선일보(2025. 4. 8.), '미국의 관세에 반격:중국이 준비했다는 6가지 묘수'; 中国商务部(2025. 4. 9.), '中美经贸关系中方立场白皮书|商务部有关负责人就《关于中美经贸关系若干问题的中方立场》白皮书答记者问'.

1기 때와 같이 협상으로 양국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산업의 발전 및 자체 공급망 구축, 무역 다변화, 철저한 사전 준비 등으로 인해 美·中 무역분쟁을 대하는 중국의 자신감이 커졌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美·中 간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 시 중국정부가 미국産 상품의 수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중국의 전략적, 핵심적 이익과 관계된 분야에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6)]

또한 중국정부는 향후 장기적인 리스크 방지를 위해 중국 경제의 미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가는 데 노력할 것이다. 내수 진작과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에 더욱 힘 쏟고, 유럽, 일본, 한국 등의 주요국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국과의 교역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찾으려 할 것이다.[7)]

美·中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높은 관세가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기업이나 중국에서 부품·소재를 공급받는 對미국 투자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8)]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돼 기업들이 美·中 각각에 이중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면 결국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을 위해 자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면, 제3국 시장 및 우리나라 내에서 해당 산업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中国首席经济学家论坛(2025. 4. 8.), '连平 : "对等关税"对中国经济影响几何？怎样应对？'.
7) Yun Sun(2025. 2. 6.), 'China's Trump Strategy'.
8) 한국무역협회(2025. 3. 10.), '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글로벌 제조업 중심 꿈꾸는 인도·ASEAN 우리 수출 활로 될까?

트럼프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며 美·中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대체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산업 맞춤형 접근을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트럼프 美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날, 무역안보관리원의 서정민 원장은 수입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TRA가 1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운영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수출·투자기업들의 대체시장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KOTRA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중동·인도 등 신흥개발도상국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으로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의 문의가 270건가량 접수됐다. 해외 생산거점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도 늘었다. 올해 1월부터 2월 18일까지, 기존 생산거점을 타국으로 이전하려는 투자 진출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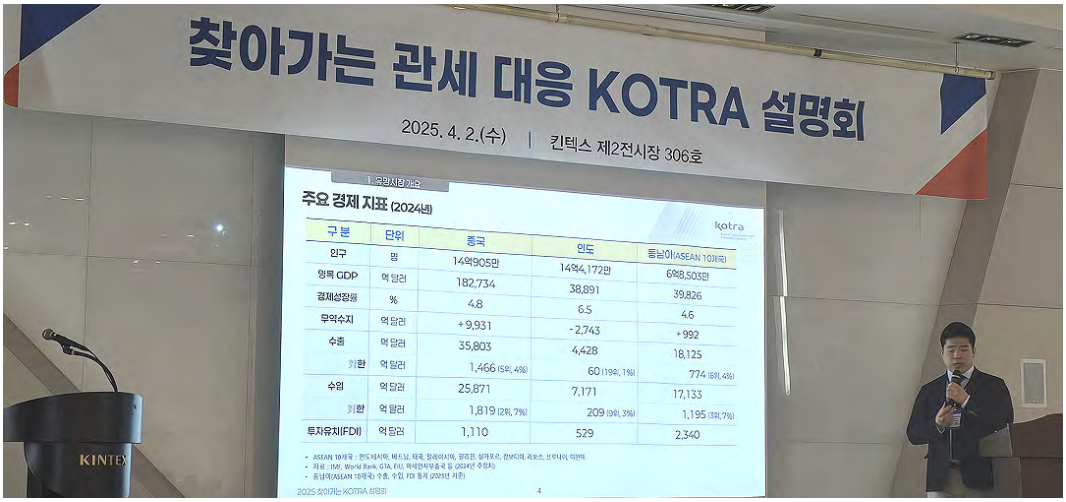

4월 2일 킨텍스에서 열린 '찾아가는 관세 대응 KOTRA 설명회'에서 박주호 과장이 대체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 주간관세무역정보)

대체시장 발굴의 중요성은 4월 2일 킨텍스에서 열린 '찾아가는 관세 대응 KOTRA 설명회'에서도 강조됐다. KOTRA 아시아중아팀의 박주호 과장은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대체시장으로 중국, 인도, ASEAN을 꼽았다. 여기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우선 3개 지역의 인구수를 합치면 35~40억 명으로 전 세계 절반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인 것과 달리 중국은 4.85%, 인도 6.5%, ASEAN 4.6%로 높다. 투자유치(FDI)도 높다. 중국의 FDI는 1,110억 달러, 인도 529억 달러, ASEAN 2,340억 달러 선이다.

경제성장률 6.5%, 젊은 인구 바탕으로 고성장하는 인도

인도는 KOTRA가 작년 12월 발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유망지역 6'에도 선정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따르면 인도는 2022년부터 G20 가운데 경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며, 이는 202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규모는 1조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특히 제조업 강화책인 'Make In India' 고도화의 일환으로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 반도체 제조시설 프로젝트 비용 지원 등 정부 주도로 제조업 기반이 확장 중이다. 글로벌 제조 중심지가 되려면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만큼 유망 진출 분야로는 도로, 항만, 공항, 건설·토목 및 전력 인프라 시장이 꼽혔다.

또한 인구밀도 및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도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수요는 2040년까지 연간 4.5% 속도로 증가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의 조의윤 수석연구원은 '모디 총리 3연임과 對인도 투자진출 진단' 보고서를 통해 "인도는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공장으로 부상 중이다.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해왔던 '중간재 수입 → 수출재화 생산 → 최종재 수출' 역할이 탈중국 현상과 맞물려 인도로 이전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4년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시점'에 대해 46.5%의 기업이 '3~5년 내'라고 답했다. 이어 5~10년 내(29.9%), 3년 내(14.0%)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 투자를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풍부한 내수시장(81.5%)'이 꼽혔으며, 인도시장 내 유망산업으로는 반도체(18.25%)가 가장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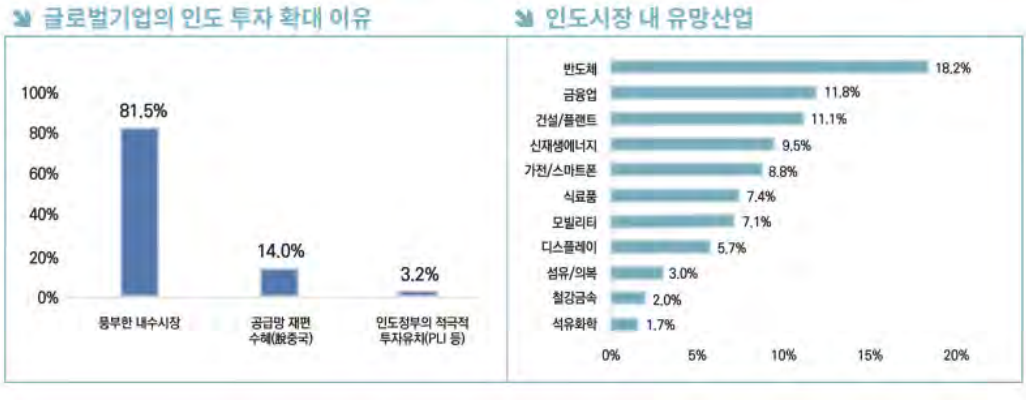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모디 총리 3연임과 對인도 투자진출 진단'

하지만 인도가 보호무역조치를 늘리며 인도에 진출한 산업에 대한 기술무역장벽(TBT)까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사항 중 3분의 1이 인도 관련으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업들은 복잡한 행정절차(20.1%), 인도 정부의 낮은 정책 일관성 및 약속 미이행(15.2%), 물류 및 유통 인프라 취약(14.9%), 세무 등 조세제도 불확실성(13.1%), 기업 간 계약절차 불명확성 및 신뢰 부족(10.0%) 등의 고충도 언급했다. KOTRA 박주호 과장은 "인도정부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전자상거래 성장과 한류 확산으로 인도 소비시장에 대해 수출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도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기업 간 계약과 관련해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만큼 인도에서는 모든 일처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美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두고 오히려 인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인도 델리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글로벌 무역연구 이니셔티브(GTRI, 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는 미국이 중국(54%), 베트남(46%), 태국(36%), 방글라데시(37%)와 비교해 인도에는 26%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4월 3일(현지시간) 해외매체 BBC에 따르면 GTRI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중국과 방글라데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인도 제조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 생산규모 확대, 對美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의 對美 수출 상위 3가지 물품은 전자제품, 보석류 그리고 의약품인데,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의 對中 관세가 125%이며, 펜타닐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관세 20%가 더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1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전자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인도수출기구연합(The 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sations)의 아제이 사하이 사무총장은 프랑스의 AFP통신을 통해 "인도에 부과되는 관세는 예상보다 확실히 높기 때문에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인도가 다른 제조업 경쟁국보다는 부담이 낮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많은 국가가 우리보다 더 타격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매체는 7일(현지시간)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중국 외 지역에서 제조 역량을 다변화하고자 인도를 제2의 핵심거점으로 보고 생산물량을 더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세가 중국보다 낮은 인도에서 아이폰을 들여오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GTRI의 연구원 아제이 스리바스타바 또한 "전반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체제는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 이득을 얻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의 조의윤 수석연구원은 "인도의 전자, 자동차, 건설 수요로 발생한 국내

부가가치액은 높게 나타났지만, 그밖에 다른 산업과 관련된 부가가치 비중은 낮아서 투자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 국내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식품가공, 섬유, 의약품 등의 산업에도 주목하는 한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도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SEAN, 한류 영향 더해져 수출 돌파구 될까?

박주호 과장은 2024년 ASEAN의 GDP는 3조 9,826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 4.7%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2%,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2%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ASEAN 10개국의 인구는 6억 8,5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8.6%를 차지한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위연령이 30.9세로 노동 가능 인구 및 잠재적인 소비력을 갖춘 인구가 많다는 의미로 결국 소비시장이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대외교역도 확대되는 중으로 2023년 ASEAN의 교역규모는 3조 5,000억 달러로, 2019~2023년 교역규모는 연평균 5.8% 증가했다. 한국은 ASEAN의 4대 교역대상국으로 1,966억 달러를 기록했다[중국(6,967억 달러), 미국(3,959억 달러), 일본(2,395억 달러)].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2,340억 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금융(40%), 제조(22%), 전문과학기술(9%) 순이다. 한국은 미국(750억 달러), 중국(176억 달러), 일본(161억 달러), 홍콩(150억 달러), 싱가포르(144억 달러)의 뒤를 이은 6대 투자유치 대상국(107억 달러)이다.

빅주호 과장은 "인구, 소비, 디지털로 ASEAN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한다. 박 과장은 "특히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며, "한류 영향력이 더해져 우리 기업에 새로운 수출 돌파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ASEAN 지역에서 한국 제품의 구매 경험률은 98.3%에 달하는데,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은 전 세계 한류 영향력 상위 5개국에 모두 포함돼 있을 정도로 한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ASEAN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축전지, 태양광 패널 등 미국의 對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생산기지가 이전되는 등 글로벌 기업의 대체생산지 투자로 부품·장비 및 기술 협력의 기회가 존재한다. 현재 ASEAN 각국이 현지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 비중을 2023년 11.7%에서 2030년 25%로, 제조업 부가가치는 2018년 49%에서 2030년 65%로 확대하고자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을 추진한다. 태국정부는 '중소기업 진흥계획'으로 중소기업의 산업 고도화와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있다.

세종연구소에서 펴낸 세종포커스 정세전망 2025 특집호 '2024년 ASEAN 정세 평가와 2025년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ASEAN에도 도전이 된다.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對미국 무역흑자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연구소는

"ASEAN 회원국들은 무역 다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대체시장 발굴과 새로운 경제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탈중국 현상이 본격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 ASEAN은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ASEAN을 대체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 힘입어 베트남은 전자제품 제조의 허브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및 기타 첨단산업의 핵심 생산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SEAN, 글로벌 진출 위한 테스트베드로 적합

워낙 문화가 다양한 만큼 국가에 따라 유망시장도 다르다. 우선 박주호 과장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진출 전략을 추천했다. 두 국가는 비용 효율적이며 쉽게 접근 가능한 의료기기·소비재 의약품(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품질보다 가격 중심의 시장이 형성됐지만, 인도네시아는 품질과 안정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는 편이다. 당뇨, 고혈압 등 노인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공공조달 의료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의료 소모품(의료용 장갑, 마스크 등)이 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다만, 현지 정부의 의약품 규제가 심한 편으로 인증 절차에도 장시간 소요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의료기기, 의약품은 보건부(MOH) 관할의 조건부 수입 품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자가 유통 허가를 받았는지 알아보는 수입자 자격 취득 여부다. 취득을 한 상태라면 수입물품의 등급을 분류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A, B등급은 수입자가 소재한 보건국에 적용표준신고를 하게 되고 위험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C, D등급은 베트남 보건부에 의료기기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의 황혜준 관세사는 "C, D등급일 경우 유통등록 신청서,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서, 의료기기 소유자 위임장, 보증자격 인증서, ASEAN 공통기술문서(CSDT) 등 9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해당 의료기기를 등록하는 데 최소 3일에서 두 달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간소하게 허가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허가 받았다면 약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작년 12월 31일 FTA가 발효된 필리핀도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견조한 내수 소비, 인프라 투자, 낮은 실업률이 뒷받침돼 2024년 약 6%에 이어 올해에도 6.1%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OTRA 김윤환 마닐라 무역관은 작년 12월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보고서를 펴내며 "필리핀 발전계획(PDP 2023~2028)에 따라 인프라 개발, 교육 투자, 디지털 혁신, 식량 안보 분야 등을 중점으로 정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과 건설업이며 한국 기업의 진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 필리핀정부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다. 2억 8,2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 2024년 기준 무슬림 인구가 2억 4,5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7.08%를 차지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정부는 자국 내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할랄 제품 인증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세계 이슬람 경제(GIEI) 지표에서 말레이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KOTRA의 이우주 수라바야 무역관은 "인도네시아정부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이슬람 경제 중심지가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체시장 발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출액은 지난 2월 95억 8,000만 달러로 중국(95억 1,000만 달러)을 넘어선 데 이어 3월에도 103억 2,000만 달러로 중국(100억 9,000만 달러)보다 많았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의 보복관세 등으로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체시장 발굴로 수출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간 FTA에도 속도를 낸다. 8~11일 말레이시아와의 FTA 체결을 위한 제8차 공식협상을 열고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0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말레이시아는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 3위, 투자 4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 기업으로서는 미국의 우회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역정책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산지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ASEAN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수출대상국의 중국産 중간재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産 중간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적용 기준과 검사 방식에 관한 정책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한 상호관세율 46%를 발표, 이어 9일(현지시간)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KOTRA 호치민 무역관 황혜준 관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생산지가 여러 곳인 글로벌 기업은 국가별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베트남에만 생산기지를 두거나 투자를 한 기업은 타격이 클 것"이라며, "현재 베트남정부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미국 관세정책 영향에 즉각 대응하는 한편, 자동차, LNG, 아몬드, 건포도, 닭고기 등 미국 관심품목의 관세(MFN세율)를 인하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실시간으로 동향을 전파하는 한편, 현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주호 과장은 "ASEAN은 다양한 문화가 포함된 곳인 만큼 세분화된 구매요인을 고려해 타깃 소비계층별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좋다"며, "다양한 소비층과 구매 요인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전 테스트용으로 ASEAN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제3국에서 일부 생산이 이뤄진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EU FTA
질문	건강기능식품(제2106.90호)의 생산 과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한·EU FTA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산] 프랑스(캡슐 형태로 제작) → 스위스(플라스틱병에 담는 포장 작업) → 프랑스 운송 → 한국 수출
답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2조 영역의 원칙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 내에서 중단없이 충족돼야 하며, 해당 건은 생산 과정의 일부인 포장작업이 역외에서 수행되므로 원산지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 원산지 판정 및 역내생산원칙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원산지 판정 내용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해당 수출국에서 제조되고 생산돼야 한다는 추상적인 요건만 둔다면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의견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각 협정에서는 물품의 HS Code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정해놓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은 크게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으로 나뉜다.

그런데 FTA의 기준을 이보다 더 깊게 본다면 해당 기준은 단순히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원산지 상품 요건)이고, FTA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존재한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만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 FTA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을 충족해야만 FTA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종류로 완전생산기준, 역내생산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있다.

(2) 역내생산원칙

역내생산원칙은 어떻게 보면 원산지가 한국산이기 위해서 당연히 충족해야 할 요건이 설명돼 있다. '물품의 생산이 협정 당사국 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돼야 한다는 원칙'인데, 당연히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물품 생산이 중단없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EU 역내산이 되기 위해서는 EU 내에서 물품의 생산이 중단없이 수행돼야 한다.

한·EU FTA의 협정의 적용 가능한 영역은 한·EU FTA 제15.15조(영역적 적용)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이 협정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적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의 조약(TEU, Treaties of the European Union)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 적용되는 영역에 그 조약들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② 상품의 관세 대우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한, 이 협정은 ①의 적용 대상이 아닌 유럽연합 관세영역 지역에도 적용된다. 한·EU FTA에 따라 EU의 영역에서 생산·수입되는 상품은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EU의 영역은 1993년 발효된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과 1958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로마조약)이 적용되는 영역과 이외의 유럽연합 관세영역 지역이다.

우리나라 원산지의 원재료이든 우리나라 원산지가 아닌 원재료이든 납품(수입)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생산돼야 원산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장려하고 우리나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대국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모든 FTA에서는 역내생산원칙을 FTA 원산지결정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그 규정의 방식은 영역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정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규정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2조 영역 원칙에서는 "제3조(원산지 누적) 및 이 조의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역내생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역내생산원칙에 대한 단독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원산지 상품'이 되기 위한 요건에서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내생산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바로 일부 FTA 협정에 존재하는 '역외가공'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역외가공제도를 택한 협정은 대부분 OP(Outward Processing, 역외가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역외가공은 역내생산원칙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1. 역내산 원재료를

수출해 2. 역외에서 가공 후 다시 역내로 수입하고, 3. 완제품을 생산 후 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면 일정조건하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준다는 규정이다.

(3) 직접운송원칙

FTA 원산지 판정 및 특혜관세 적용 절차에서 제3국에서 어떤 작업도 수행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를 적용함에 있어 협정에서 정하는 아주 좁은 범위에 대해서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

직접운송원칙은 FTA를 적용하기 위해 국제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제3국을 거치지 않고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 운송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직접운송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 당사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 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 협정 당사국 간의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제도의 목적상 필요해 보이는 직접운송원칙은 그 예외가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칙대로만 엄격하게 운송요건을 적용한다면 다른 국가를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물품들은 모두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물류실무상 환적이나 경유는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화물에 대한 FTA 적용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한다면 FTA 활용도가 급감할 위험이 존재할 것이다.

직접운송원칙은 해당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주형, 유럽형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미주형은 '직접운송 될 것'을 규정하지 않고 통과나 환적을 하는 경우 비당사국에서 추가 공정(가공)을 수행하거나 해당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에 있지 않다면 FTA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간접적으로 직접운송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반해 유럽형은 협정상에 '직접운송 될 것'을 명시한 협정을 말한다. 그 대신 일정조건에서 직접운송에 대한 예외를 둬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경유하거나 환적해도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예외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호의 대상 협정인 한·EU FTA는 협정문에서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유럽형 FTA이며, 관련 규정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한·EU FTA 또한 특혜대우(FTA 특혜관세 적용)가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접운송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돼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며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라는 짧은 언급만 있을 뿐 오히려 예외규정에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원칙적인 상황에서는 그대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인정되는 반면, 환적이나 경유를 하는 경우 직접운송의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운송의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EU FTA는 EU 자체가 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EU 국가 간 이동이 이뤄진 뒤 우리나라로 물품이 운송되는 상황은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관세청에서는 "독일에서 생산된 물품을 폴란드 보세창고에서 화물분리 후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일에서 선적돼 EU 역내 국가인 폴란드의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분리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제2106.90호)의 생산 과정[프랑스(캡슐 형태로 제작) → 스위스(플라스틱병에 담는 포장 작업) → 프랑스 운송 → 한국 수출]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는 EU(유럽)가 아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에 속한 국가로 한·EU FTA의 관계에서는 비당사국(제3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EU FTA 목적상 역내생산원칙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생겨 FTA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질문 & 답변 사례에서는 프랑스에서 생산된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스위스에서 플라스틱병에 담는 포장 작업이 스위스 수입 후 진행됐는지 아니면 스위스 내 보세구역에서 진행됐는지 제시되지 않았지만, 스위스에서의 작업이 수입통관이 이뤄지지 않고 보세구역 내에서 진행된 뒤 프랑스에 다시 운송된 것이라면 한·EU FTA상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관련

HS Code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호 해설서에서는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크게는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및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B)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이 분류되는데, 해당 제품들은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색소·향미제·방향성(芳香性) 물질·캐리어(carrier)·충전제·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제2106호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들은 제2106.90호(기타 조제식료품)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한·EU FTA에서의 제2106.90호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물품들에 비해 제2106.90호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여러 가지 원산지 결정기준이 조합돼 있다.

협정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EU FTA	제2106.90호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한·EU FTA에서 제2106.90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 특정 소호 완전생산기준 + 특정 류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결합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돼 있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제2106호가 아닌 비원산지 재료로부터 제2106호로 변경돼야 하고, ②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있다면 해당 원재료들은 체약상대국에서 완전생산된 원산지 물품이 사용돼야 한다. 또한 제4류 또는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존재한다면 각각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 제4류,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없다면 ①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 충족하면 되나, 각 HS Code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결합기준을 적용해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질문 & 답변 사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역내생산원칙 등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플라스틱병에 담는 포장작업을 스위스가 아닌 프랑스에서 진행했다면, 이는 소매용 포장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7조(원산지 자격 단위)에서는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역내생산원칙 충족 여부

일단 역내에서의 생산이라는 개념은 협정별 또는 법률마다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 상품 요건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 생길 것이다. 한·EU FTA에서의 생산이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캡슐 형태로 제작된 건강기능식품은 제2106.90호의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측되며, 제2106.90호에 해당되는 건강기능식품(벌크)이 스위스로 운송돼 플라스틱병에 담는 포장 작업 후 프랑스로 운송됐다가 다시 수출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EU FTA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역내생산원칙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2조(영역 원칙)

1. 제3조 및 이 조의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자로부터 비당사자로 수출된 원산지 제품이 재반입될 경우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일정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대한민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에 따라 양 당사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의정서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모두 검토해 봐야 한다.

제1항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의정서 제3조의 규정은 누적을 의미하며, 한·EU FTA에서 누적은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해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되는 규정이다.

다만, 스위스는 한·EU FTA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됐다는 규정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한·EU FTA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제2항은 재수입물품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한·EFTA, 한·EU FTA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출됐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제품(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1.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해야 하고, 2.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례의 스위스에서 행해진 생산 과정은 '플라스틱병에 담는 포장 작업'이며, 이는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 공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정도 충족할 수 없다.

제3항은 역외가공에 관한 규정으로 부속서 4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다. 다만, 이번 사례는 일단 프랑스산 원산지 상품에 대한 역외가공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부속서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자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제15.2(전문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설치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역외가공에 관한 규정임을 알 수 있고, 현재까지도 인정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3항도 충족하지 못한다.

즉 해당 물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인데, 해당 규정 모두를 불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답변 사례에서도 영역의 원칙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 내에서 중단없이 충족돼야 하며, 해당 건은 생산 과정의 일부인 포장 작업이 역외에서 수행되므로 원산지인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렇다면 추가로 해당 물품을 스위스 원산지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EFTA FTA의 제2106.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협정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EFTA FTA	제2106.90호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일단 부가가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2단위 세번변경기준, CC)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장작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HS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만에 하나 해당 규정을 최소허용기준 등을 적용해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일단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이 아닐 것이다. 한·EFTA FTA [부속서 Ⅰ]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공정)에서는 포장의 변경 및 포장의 해체와 조립을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은 한·EFTA FTA에 따라 스위스산으로 판정될 수 없을 것이다.

(4) 직접운송 규정 검토

만약 스위스의 보세구역 내에서 포장 작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면, 직접운송 예외의 규정에 해당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 방법을 안내한 바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는 개별 협정과 국내법령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요건과 입증서류가 다른 경우 협정을 우선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즉, 각 협정의 해석이 FTA 특혜관세 적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3국 장기간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폐 등으로 물품 조작 위험이 큰 경우에 한해 직접운송 입증서류를 요구하며 제3국 단순 경유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물품의 조작 위험이 없는 경우(제3국 경유 전후에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EU FTA에 대한 직접운송 관련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협정	비당사국 경유 요건				비당사국 경유 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세관 통제	사유	불인정	인정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 공정	전체운송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EU	○			○	단일운송서류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상황 증거

한·EU FTA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는 데 있어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공정에 대해서만 제3국에서의 작업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공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서는 환적(TRANSSHIPMENT)에 대해 규정하면서, "원산지 물품이 USMCA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운송될 경우 물품이 USMCA 국가의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이나 기타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며, 역외국에서 허용되는 작업으로 하역, 재적재, 대량 화물의 분리, 보관, USMCA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라벨링 또는 기타 표시(unloading; reloading; separation from a bulk shipment; storing; labeling or other marking required by the importing USMCA country) 외에 물품을 수입국으로 운송하거나 물품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작업(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USMCA country or to preserve the good in good condition)"에 대한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의 예시는 "(i) 검사(inspection), (ii) 운송 중 발생한 먼지 제거(removal of dust that accumulates during shipment), (iii) 환기(ventilation), (iv) 펼침 또는 건조(spreading out or drying), (v) 냉각(chilling), (vi) 소금, 이산화황 또는 기타 수용액 교체(replacing salt, sulphur dioxide or other aqueous solutions), (vii) 손상된 포장재 및 컨테이너 교체(replacing damaged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그리고 부패하거나 손상되어 나머지 물품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 단위 제거(removal of units of the good that are spoiled or damaged and present a danger to the remaining units of the good)"이다.

해당 내용을 한·EU FTA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는 스위스에서 플라스틱병에 담는 포장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중국에서 절단, 포장 작업 후 우리나라로 수입해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도 역내생산원칙 및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 일단 한·미 FTA는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고,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생산이 중국에서 이뤄진 경우 역내생산원칙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유국인 중국에서 절단, 포장 작업이 이뤄졌는데 이 또한 하역, 재선적,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전하는 공정 등에 해당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산 수산물을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서 위탁가공(내장제거 등)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노르웨이에서 획득된 연어를 인도네시아에서 내장제거 후 한국으로 수출한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진 내장제거 공정이 '그 상품의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의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직접운송원칙의 위반으로 한·EFTA 협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직접운송의 예외를 적용할 때 허용 가능한 작업의 범위는 FTA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한·호주 FTA의 경우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수입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포장 공정), 재라벨링(수입 당사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라벨을 붙이는 것),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을 인정하여 다른 협정들에 비해 비당사국의 작업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고, 직접운송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직접운송의 예외를 적용할 때의 작업 범위는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자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까지이지만, 연결 원산지 증명 시에는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까지 인정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FTA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가 및 실무자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지,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할지 등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항온항습기의 HS Code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항온항습기의 품목분류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의 '그 밖의 기기'의 '기타'의 '항온항습기'에 해당된다면 제8419.89-9070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8419	89		기타
8419	89	9070	항온항습기

원산지 / 원산지표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돼 있으면 판매포장에는 원산지표시가 없어도 무방한가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입 / 입항전신고

입항전신고가 가능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에서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시 제7조에 따라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항전신고는 선박(항공기)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입항 후 하선(기)신고하기 전까지[입항보고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는 최종 입항보고 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수통관 / 광파기 수입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광파기(거리측정기)를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을까요?

해외 직구 시 개인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방법**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www.customs.go.kr/cvnci/main.do) >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 042-714-7535)

분류된 품목번호로 수입요건, 관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 세계 HS > '검색'에 HS Code 입력 후 조회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2과 : 032-723-5203~7/5228, 032-722-4825(1과), 032-723-5274, 5258, 5252(3과)
※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FTA / HS Code 상이 시 RCEP 적용

일본에서 상품을 수입하며 받은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에 기재된 HS Code와 한국에서 HS Code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도 달라진다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세청 지침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상대국 수입신고서, 품목번호 확인서, 해당 수출물품이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규정된 품목임이 입증되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록정보 등 포함)로 동일물품이 입증된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 간 HS Code가 일치하지 않아도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 HS Code가 상이해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음 예시와 같이 수입신고서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적용 예시

1. 원산지증명서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수입신고서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 제품에 해당

2. 원산지증명서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수입신고서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 역내가치발생기준 35%
→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 제품에 해당

3. 원산지증명서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수입신고서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선택기준)
→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제품에 해당

감면물품 사후관리 부실 등이 감면부적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2023관0112(2024. 12. 2.) 대상결정례 -

최 천 식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Ⅰ. 머리말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제1항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관세 면제받은 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관세법」 제102조에 따라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납세자는 세관장의 사후관리 점검에 대비해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고유번호(serial)별로 구분·보관하거나 국내 유통 시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 살펴볼 쟁점물품은 고유번호만 달리할 뿐 동일한 형태와 규격을 갖춘 수만 개의 특수가스 운반용기로서 국내·외에서 특수가스 충전을 위해 실병과 공병이 순환돼 수출입되는 거래구조를 가진 물품이다. 재수출면세를 받은 쟁점물품이 수만 개에 이르다 보니 일부 물품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회수 지연이 발생해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기도 했고 일부 물품은 국내 유통경로에 대한 추적 기록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력조회가 되지 않은 일부물품에 대해서는 고유번호와 상관없이 총량 중심으로 수입물량과 재수출도래물량을 집계 후 상계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했다.

이에 세관장은 감면물품의 고유번호별로 이력조회가 어렵거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또한 쟁점물품 고유번호별 이력조회가 불가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당시부터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세법」 제87조의 재수출 불이행가산세가 아닌, 제42조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를 통해 세관장이 행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처분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 및 수입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주로 디보란(B2H6), 암모니아(NH3) 등과 같은 특수가스와 특수가스를 담는

전용 '용기'를 미국 본사 또는 중국 등에 수출입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2년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중 「관세법」 제97조에 의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 수입신고한 용기(쟁점물품)에 대해 감면 부적정 및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봐 2023. 4. 3. 관세 등을 경정고지(이하 '경정처분 ①'이라 한다)했고, 2023. 4. 18. 부정 감면을 받은 것으로 봐 관세 등을 경정고지(이하 '경정처분 ②'라 한다)를 했으며, 2023. 5. 3. 나머지 수입신고 건에 대해 감면 부적정으로 봐 관세 등을 경정고지(이하 '경정처분 ③'이라 하고, 경정처분 ①·②·③을 합해 '선행처분'이라 한다)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Ⅲ.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부정 감면 및 감면 부적정으로 판단해 경정·고지한 처분은 과세방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가) 재수출 이행기한(2년)이 도래하지 않은 수입 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이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수입신고한 건 중 감면 부적정으로 추징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2022. 4. 25. 수입된 물품의 경우 재수출 이행기한이 2024. 4. 24.로 재수출 이행기간이 약 2년 남아 있고, 수입일(2022. 4. 25.)이 관세조사 통지일(2022. 4. 22.) 이후인 수입신고 건은 관세조사 통지일까지 물리적으로 재수출이 불가능하나 이런 수입신고 건까지 포함돼 있다.

처분청의 과세 방법에 따르면, 아직 재수출 이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재수출 예정인 용기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일괄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관세조사 개시일(2022. 5. 9.)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기준으로 처분청이 추징한 대상 용기 중 대부분이 재수출 및 이행보고가 됐으며, 나머지 과세대상 용기도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수출될 예정이다.

처분청이 감면 부적정으로 분류한 용기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히 어떤 용기번호가 재수출 이행기간 내 수출되고 이행보고 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처분청이 판단한 과세대상 용기의 개수 대비 동일한 수입신고번호로 수입된 용기 개수와 재수출된 용기 개수를 비교해 보면, 대다수가 이미 재수출됐음이 확인돼 재수출이 미이행된 용기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한다.

예를 들어 2021. 9. 23. 수입신고한 경우 처분청은 전체 수입된 용기 288개 중 171개를 감면 부적정

으로 판단했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용기관리시스템(이하 'MIS'라 한다)과 수출신고 내역, 재수출 이행보고 내역을 확인하면 수입된 용기 288개 전부가 이행기간 내 재수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경정대상으로 판단한 자료는 관세조사 시작 시기인 2022년 4월 기준이므로 아직 수입신고 건의 재수출 이행기한인 2023. 9. 22.이 도래하지 않아 재수출된 내역이 없는 자료다.

(나) 처분청은 2022. 7. 15.부터 2023. 5. 10.까지 총 18차례에 걸친 이메일을 통해 청구법인에 감면 부적정 용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으나 적절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합리적 의심에 따라 과세처분을 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2022년 4월의 청구법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오류로 인해 적법하게 재수출 이행기간인 2년 내 용기가 재수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선행처분을 했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야 한다는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게 '합리적 의심'으로만 과세처분을 했다는 사실을 자인했으므로 선행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불복절차 수행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재수출 불이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입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수출되지 않았는지, 또는 재수출 이행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나, 처분청은 감면이 부인된 부정감면 건에 대해 란을 분리해 추가로 신설해 과세했으나, 란 분리 전후 기재돼 있는 규격사항의 용기번호가 완전히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어떤 용기번호가 실제로 재수출 이행기간 내 적법하게 수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에 수차례 공문 형식으로 감면 부적정 판단의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처분청은 이메일을 통해 전체 수입신고 건 중 '이상 없음'으로 판단한 내역을 제외하고, 모든 감면내역을 부인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처분청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에 기재된 내용과 세액경정통지서 어디에도 어떠한 근거로 감면이 부인됐는지 또는 어떤 용기가 적법하게 재수출이 이행되지 않아 감면이 부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감면 부적정(23,554개)의 내용은 관세조사 후 약 1년이 지난 2023. 4. 11. 이메일에 언급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과세근거자료의 미비로 납세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세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선행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3) 선행처분 중 가산세는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함께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 규정은 「관세법」

제42조에 있으나, 이와 달리 관세행정 협력의무위반 시 부과되는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는 같은 법 제97조 제4항에 별도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선행처분은 재수출 불이행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가산세가 아니라 같은 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돼야 한다.

(4) 경정처분 ② 중 부정감면으로 중가산세 40%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수의 법원 판결에서 부정 감면을 판단할 때,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점부터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감면 규정을 적용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실제로 부정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MIS를 통해 용기를 관리했으나, MIS의 기능이 미흡해 재수출 이행기간이 도래한 용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실제 수출된 용기번호와 다른 용기번호가 재수출 이행보고된 오류가 발생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내 재수출을 전제로 관세감면을 신청한바, 약 97%(약 190,000병 중 약 184,000병)의 용기는 2년 내 재수출 이행보고를 적법하게 수행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재수출 이행보고의 오류는 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부정한 의도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용기 멸실, 고객사의 용기 반환 미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 내 재수출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용도 외 사용 신청을 하고 수입신고 시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 왔으며, 현재까지 용도 외 사용 신청에 따라 약 ○○○원 이상의 관세를 납부한 바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점부터 부정한 의도로 감면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MIS기능이 미흡해 용기 이력관리가 어렵다면 이를 개선했어야 하나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청구법인이 부정한 의도로 감면신청했음을 증명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고의성 및 부정한 의도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처분청은 이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부정감면에 대한 판단과 부정신고가산세 적용은 그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60%의 중가산세를 부과했는바, 중가산세율(60%)의 적용은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한정되며, 역외거래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수출입물품은 가스이고, 용기는 가스 운반에 부수되는 운반수단이다. 이건 용기는 거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외거래로 취급해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한정해 적용하는 중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에 대한 중가산세 규정은 2014년「국세기본법」개정 시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역외탈세의 정의와 청구법인의 재수출 불이행과는 관련이 없으며, 재수출 이행은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일어나므로 과세행정력이 제한되는 지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 의견

(1) 재수출 이행기간(2년)이 도래하지 않은 건을 일괄 추징대상에 포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재수출면세 수입의 경우 대부분(약 72%) 원칙적인 재수출 기간(1년)이 도래하기 직전에 재수출 이행기간을 2년으로 일률적인 연장신청을 했다. 청구법인이 재수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로 가스 수입 후 국내로 공급했으나 거래처로부터 용기가 회수되지 않았거나 혹은 용기 내부 클리닝 및 검사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해외거래처의 발주가 없어 용기 수출이 어렵다는 일률적인 사유였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경 수입한 공병은 가스 충전 후 2022년 4월까지 수출을 완료했음에도 재수출기간 연장 사유를 "수입 후 국내 납품하였으나 용기 미회수"로 재수출기간 연장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청구법인은 재수출 이행기간(2년)이 남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재수출 이행기간이 남은 수입신고 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소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재수출 이행기간이 남은 용기가 실제로도 재수출 미이행 상태임을 처분청에 확인시키고, 이후 재수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등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소명할 수 있었으나, 1년의 관세조사 기간 동안 이에 대한 확인이나 처분청에게 소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재수출 이행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재수출 이행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일률적인 재수출 이행기간 연장신청 사유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로, 만일 재수출 이행기간에 대한 일률적인 연장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면 부적정에 따른 추징이 최초로 있었던 2023. 4. 3.을 기준으로 수입신고일로부터 재수출 이행기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수입신고 건은 27건이다.

재수출면세 신청이 적정했다는 입증책임 즉, 적정하게 감면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용기가 관세 면세를 받기 위한 적정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된 용기가 법령에 따라 재수출돼 최종 재수출 이행보고가 완료돼야 하고 이를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 면세를 받은 대부분 용기는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사기간 동안 충분히 확인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용기의 대부분이 추징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소명하는 용기나 제출된 서류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용기는 추징 대상에서 최대한 제외시켰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미제출해 확인할 수 없는 용기 내지 MIS상으로 재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용기들은 추징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에 반해 재수출면세 용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더불어 1년 여의 관세조사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상호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지만, 청구법인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

따라서 재수출 이행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수출기간 연장신청 사례와 같이, 허위에 의한 재수출기간 연장에 의해 일률적인 재수출 기간 연장을 초래했는바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은 비록 재수출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 즉, 적정한 재수출면세 수입이라는 입증을 달리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처분대상에 재수출 이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수입신고 건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행처분이 부적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과세 처분의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 처분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22년 5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방문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받아 수입하는 '용기'에 대한 심각한 위법사항을 확인했고, 수십만 개에 달하는 용기에 대해 정상적으로 재수출된 용기와 허위로 재수출신고를 하는 등의 위법한 용기를 구별하기 위해 약 1년간 청구법인과 최선을 다해 선별작업을 했다.

청구법인은 용기를 크게 ① 수입가스를 담은 '상품 실병', ② 수출가스를 담는 '제품 실병', ③ 빈 용기인 '공병'으로 나눠 MIS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아 수입한 공병에 가스를 충전해 재수출하거나, 가스가 충전된 실병을 수입해 가스는 사용하고 공병만 재수출하는 등의 거래를 했고, 공병과 실병에 부여된 용기의 고유번호를 수입부터 재수출까지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공병과 실병이 계속해 순환해 수출입되거나 국내 업체에 납품되는 등 복잡한 거래구조로 인해, 적정한 수출입 거래와 위법한 수출입 거래에 사용된 용기를 확인해 구분하는 작업은 처분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의 협조와 자료제출 등의 충분한 조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복잡한 용기 거래를 완전한 전산작업이 아닌 가스 관리를 위한 수준 정도의 불완전한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용기관리능력과 의지 및 용기관리시스템 수준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고, 청구법인에 과연 면세된 용기에 대해 관리 의지가 있는지도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최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용기와 위법한 거래에 투입된 용기를 구분하기 위해 처분청은 최선을 다했으며,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이러한 노력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담당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수차례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최종 산출된 결과물을 근거로 2023. 4. 3. 청구법인에 최종 조사결과 통지를 한 것이다.

추징대상 용기목록의 내용에는 ① 부정 감면대상 용기 2,068개, ② 용도 외 사용추징 대상 용기 125개, ③ 이상 없는 용기 123,699개에 대해 수입신고번호별 용기번호가 특정돼 기재돼 있다. 다만, 감면 부적정 추징대상 용기 23,554개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관세조사 대상 수입신고 내역에서 위 ①, ② 및 ③의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용기에 대한 것임을 고지했고, 감면 부적정 대상 용기의 개수만을 청구법인에 통보했다.

비록 청구법인이 추징대상 용기목록에서 감면 부적정 추징대상 용기 23,554개에 대한 용기번호 리스트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전체 수입 용기에서 ① 부정감면 용기, ② 용도 외 사용 용기 및 ③ 이상 없는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용기가 감면 부적정 추징대상 용기에 해당함을 충분히 설명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용기 소명내역' 자료에서 청구법인 스스로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확인된 '용기 소명내역'과 '추징대상 용기 목록'이 청구법인에도 이미 통보됐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줬으므로 처분청이 과세 처분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정한 의도로 과소 신고한 행위로서 선행처분은 「관세법」 제4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는 「관세법」 제97조 제4항의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20%)를 적용해야 함에도,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단순히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 불이행 수준을 넘어, 면세를 받은 청구법인의 행위가 부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정감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감면 부적정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관세법」제97조 제4항을 보면, '기간 내 재수출 불이행'이 가산세 부과 대상이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의 위법한 행위 결과인 부정 감면과 감면 부적정에 대해서는 기간 내 재수출 불이행을 따지기 이전에, 재수출신고를 허위로 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신고 시 면세 받은 관세 추징을 면탈한 것이므로「관세법」제42조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및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해야 한다.

「관세법」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즉, 수출신고를 허위로 하고 그에 따른 재수출 이행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고, 허위에 의한 수출신고와 수입을 특정(매칭)할 수 있는 '부정감면'에 한해「관세법」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이다.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약 19만 개에 해당하는 용기를 이력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변명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시스템이 미흡해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개선했어야 하고, 이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청구법인이 부정한 의도로 관세 감면신청을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부정 감면'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건의 부가가치세에 부과된 가산세(60%)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면서,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역외거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수출입 거래가「국세기본법」상의 역외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부정감면 행위로 인해 부가가치세에 부과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60%는 당연한 처분임에도,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라 이 건 거래는 역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가산세(60%)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Ⅳ. 쟁점사항[1)]

① 청구법인이 재수출 감면신청 후 재수출 불이행 건에 대해 부정감면 등으로 봐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③ 재수출 불이행 건에 대해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가 아닌 같은 법 제4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의 재수출 감면신청을 부정 감면으로 봐 중가산세(40 ~ 6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Ⅴ. 조세심판원 결정요지

(가) 먼저 쟁점 ①·③·④와 관련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97조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재수출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 외국으로 수출됐거나 국내 고객사가 사용 중인 용기의 경우 회수가 지연돼 일부 수량은 재수출되는 실제 용기 대신 재수출 이행기한이 도래한 용기번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 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으로 관세 면제를 받고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 당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97조 제3항에서 재수출면세 물품은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재수출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감면 부적정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149,446개 수입 용기 중 123,699개의 용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재수출이 이행된 것으로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도 쟁점사항이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인용했으므로 평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선행처분과 관련된 조사내용이 불명확·불충분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국내 이동자료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재수출기간 내 수출됐는지 여부와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다만,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처분청은 부정 감면 및 감면 부적정에 대한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를 적용해 각각 부족세액의 100분의 40 및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가산세는 「관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해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과했으나,

「관세법」 제42조 규정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부정감면 또는 감면 부적정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재조사 결과에 따라 ① 재수출 이행기간 내 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해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②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관세(별도의 가산세 부과 규정 없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증가된 관세액에 100분의 10의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를 징수했고, 특히 부정감면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건의 부가가치세에 부과된 가산세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봐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쟁점물품은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에 해당해 수입 당시에는 재수출면세 조건이 충족돼 수입신고 당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와 관세의 감면액에 관한 신고를 했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 근거자료의 미비로 납세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과세처분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세 대상산정 근거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2년 5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방문조사 시 재수출면세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간 청구법인과 재수출 여부 확인작업 등을 한 점,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동일한 '용기 소명 내역'과 '추징대상 용기 목록'을 가지고 18차례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처분에 대해 경정·통지를 하면서 청구법인에 수입신고별 경정사유를 고지한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Ⅵ. 평석

1. 쟁점물품 개요

디보란(B2H2)은 반도체 및 태양광 도핑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가스로 다양한 반도체 블랭킷 및 적층증착 공정방식의 도핑물질로 사용된다. 디보란은 무색이고 특이한 냄새가 나는 기체로 강한 독성 물질이다. 흡입 시 치명적일 수 있고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습기가 있으면 자연 발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수한 용기에 저장하고 있다.[2] 압축가스는 주변 대기압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에너지로 인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의 실수 또는 기기의 파손 등으로 인한 압력의 방출은 심각한 손상 또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주변의 화재 또는 비정상적인 압력의 상승은 용기의 파손을 발생시킬 수 있고 과충전 용기 또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디보란 등의 특수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에 사용되는 재질은 대부분 탄소강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다. 특수용기는 정기적으로 국제규격 또는 해당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기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를 거쳐 다시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해야 한다. 모든 용기는 용기 몸체에 재질, 최초 검사날짜, 무게, 용적, 압력, 제작자, 재검사 날짜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3]

디보란(B2H2)의 특수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와 규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특수가스별로 저장하는 용기가 다를 수 있고 특수가스를 제작하는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기로서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용기의 형태나 고유번호(시리얼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수용기로서 안정성 측면에서 유통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2. 쟁점사항 검토

청구법인은 용기를 ① 수입가스를 담은 '상품 실병', ② 수출가스를 담는 '제품 실병', ③ 빈 용기인 '공병'으로 나눠 용기관리전산시스템(MIS)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재수출조건부면세를 받아 수입한 공병에 가스를 충전해 재수출하거나, 가스가 충전된 실병을 수입해 가스는 사용하고 공병만 재수출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개의 공병과 실병에 부여된 용기의 고유번호별로 수입부터 재수출까지의 사용이력을 일일이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은 청구법인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한다. 처분청이 1년 동안 18회에 걸쳐 청구법인과 재수출

2) 2022년 4월 충복 보은산업단지에서 특수가스제조업체(TEMC) 공장건물에서 보관 중인 디보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3) 추광호(원익머트리얼스 상무), '불활성가스도 고압일 경우엔 위험성 내포', 디지털가스신문, 2011. 5. 12.자

여부 확인 작업을 위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청구법인이 용기관리시스템(MIS)상 공병과 실병 등의 쟁점물품 고유번호를 디폴트값으로 해 정확히 기록·유지해야만 세관은 사후관리 점검을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공병과 실병이 계속 순환해 수출입되는 과정 또는 국내업체에 납품·회수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은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해 재수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청구법인은 국내 고객사가 사용 중인 용기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재수출돼야 할 실제 용기 대신 재수출 이행기한이 도래한 물품의 용기번호로 대체해 재수출신고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사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사후관리측면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해당 감면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이 도래되면 그 해당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가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 재수출 이행을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감면관리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만 개가 되는 쟁점물품의 복잡한 거래구조로 인해 용기관리시스템상 기록의 부실이나 왜곡이 발생했고 결국 쟁점물품 고유번호별 재수출 이행 여부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처분청은 용기관리시스템상 기록 부실이나 이력조회 불가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부적정 등을 처분사유로 해 ① 부정감면과 감면 부적정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②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우선 ① 부정감면과 감면 부적정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당시부터 쟁점물품 고유번호별 이력조회가 불가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또는 개선의지가 없는 채 쟁점물품을 허위로 재수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면세받은 관세를 면탈했으므로 이는 수입신고의 고의성이나 위법성 정도에 따라 부정 감면과 감면 부적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감면을 보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요건에 해당되도록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이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와 '관세를 포탈하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결했고,[4]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통해 납세자에게 세부담 감소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5]

단지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은폐행위 없이 보관한 자료와 수입신고내용을 대조해 관세탈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소극적 부정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동일한 규격의 수만 개의 물품에

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2017. 4. 13. 2015두44158 판결 등
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대해 전산시스템상 물품의 고유번호별 부실 또는 태만히 기록하는 행위 역시 소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물론 쟁점물품 일부가 국내 납품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출한 것으로 가장(假裝)해 기록하는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그 수량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정황상 관세포탈을 하기보다는 수입된 물량과 재수출할 수량을 끼워 맞추기 위해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전체에 대해 가장(假裝)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극히 일부물품에 대해서만 가장행위가 발생한 점에서 탈세하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일견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감면부적정에 대해 살펴보면, 감면부적정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거래사실이나 내용에 부합되는 자료를 세관에 제출한 상황에서 세관장이 ①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② 일단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통관을 허용했으나 추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고의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②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감면물품이라고 오인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감면 불허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과 함께 이자성격이 있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6)]

관세감면을 신청한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감면적정 여부는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감면요건을 심사한 결과 감면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통관지세관장이 수입통관 당시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이라고 인정하고 통관을 허용한 상황에서 추후 처분청의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다. 쟁점물품이 재수출면세대상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디보란(B2H6), 암모니아(NH3) 등과 같은 특수가스를 담는 전용 용기로서 공병과 실병이 계속해 순환해 수출입되거나 국내 업체에 납품·회수되는 등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수입신고서에 동일한 규격의 수천 개의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통관 후 납품·회수 과정에서 쟁점물품별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함에 따라 그 수천 개의 쟁점물품이 같은 날짜에 수출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 즉 하나의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자연스레 분산돼 각각 다른 수출신고번호를 부여받거나 재수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유통 및 회수 구조는 수만 개의 쟁점물품에 대한 고유번호별로 일일이 추적해 기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된다. 예컨대 2021년 7월 수입한 공병은 국내에서 가스 충전 후 2022년 4월 수출을 완료했음에도 전산시스템에서는 용기 미회수를 재수출기간 연장사유로 해 허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고객사로부터 공병회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 고유번호가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 재수출할 때 공병회수가 안 된

6) ①의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이 수입통관 시에 감면부적정해 감면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문제는 애시당초 발생할 수가 없다.

물품에 추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해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7] 수출신고한 차량들과 실제 수출한 차량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 사안에서 제조회사, 차량 종류 또는 규격(톤수, 연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위 대법원판결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 본다면 수입물품과 재수출물품 간에 동일성 여부를 가지고 재수출 이행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동일성을 판단할 때 비록 고유번호(대법원 사건의 경우 차대번호)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와 규격을 가지고 있어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같다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고객사로부터 공병회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 고유번호가 다른 수입물품으로 대체해 재수출한 경우 허위수출에 따른 부정감면이나 감면부적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통관지세관장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물품에 대해 감면대상이라고 인정받은 상황에서 처분청이 수입통관 후에 비록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 당초 수입통관에서 적법하게 성립된 감면신청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소급해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판단기준과 수입통관 후 쟁점물품이 재수출 또는 타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쟁점물품은 특수용기로서 특수가스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한국, 미국, 중국을 순환 고리로 해 공병 또는 실병 상태로 계속·반복적으로 수출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수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통관지세관장도 쟁점물품을 감면대상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도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으로 관세 면제를 받고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 당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사후관리 부적정 내지 가장(假裝)한 부정한 행위를 수입통관 당시로 소급해 쟁점물품을 감면부적정 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

7)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3. 가산세에 대한 검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감면받은 청구법인의 가장(假裝)행위가 단순히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 불이행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정감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8]를, 감면부적정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했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세법」상 가산세는 세액의 관련 유무에 따라 2가지 종류가 있다. ①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 제재하는 가산세로서 「관세법」 제42조에 적용받는 물품이 있다. ② 신고 또는 반출의무기한이 설정이 돼 있는 조항별 협력의무를 게을리해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관세법」 제97조(재수출불이행가산세), 제241조(수출입신고지연가산세), 제253조(즉시반출물품 미신고가산세)에 적용받는 물품 등이 있다.

통관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시 감면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고 실제적으로도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 및 시스템상 재고관리 등에서 문제가 있을 뿐 총량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재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용기로서의 기능 상실에 따른 폐기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감면요건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감면요건에 위반되는 경우 응당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 불이행가산세 부과대상이며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제42조는 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한 결과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을 발견해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적용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즉, 수출신고를 허위로 하고 그에 따른 재수출 이행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고, 허위에 의한 수출신고와 수입을 특정(매칭)할 수 있는 '부정감면'에 한해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이나 세율을 허위로 신고해 부족세액이 발생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나 세율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않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여지는 없다. 감면 적정성 문제와 과세가격 적정성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사전세액심사를 통해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았고 통관과정 또는 사후심사과정에서 과세가격과 세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감면으로 볼 수 있는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

8) 2025년 성실신고 유도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을 60%로 강화했다.

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부정한 행위 개입을 전제로 부과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부정행위 개입을 원인으로 하는 역외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4. 정책적 제안 : 고유번호별 관리제도에서 총량관리제도로 전환

동일한 규격을 가진 수천 개의 쟁점물품들이 하나의 수입신고서를 통해 수입됐지만 국내 제조 또는 유통과정에서 분산돼 사용됨에 따라 수출할 때는 수출날짜가 제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거래구조에서는 용기관리시스템(MIS)상 쟁점물품의 고유번호별로 이력관리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MIS기능이 미흡해 용기 이력관리가 어렵다면 이를 개선했어야 하나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청구법인이 부정한 의도로 감면신청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용기관리시스템의 부실한 운영을 가지고 이를 부정감면의 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세관은 적정한 사후관리를 위해 청구법인에 용기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쟁점물품의 고유번호별로 이력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처분청의 요구가 청구법인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대법원이 단지 수출차량의 차대번호가 아닌, 같은 품목번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일성을 제시한 판결을 감안해 보면, 동일한 규격과 형태를 가진 쟁점물품을 고유번호별로 관리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특례기준으로 대체가능물품이 있다. '대체가능물품'이란 동종동질의 곡물, 과일, 너트, 볼트 등과 같이 물품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해 원산지가 상이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판정은 특정 완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개별적으로 추적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능물품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재고관리기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을 이용해 원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수출감면제도에서도 다음과 같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기준과 같은 유사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일한 형태와 규격 및 가격을 가진 수입물품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수입되고 국내 거래상황에 따라 제각기 수출일이 상이할 때는 현행 고유번호 중심의 관리제를 총량관리 중심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일정한 주기로 수입된 물품의 수량과 재수출한 수량을 상호 집계해 상계처리함으로써 재수출 이행한 것으로 대체하고 상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재수출 이행기간 연장 신청 또는 용도 외 사용(용기의 멸실 등)으로 추징하는 것이다.

● 총량관리 중심제의 적용 요건 ●

1	동일한 형태와 규격 및 기능을 가지고 있어 HSK 10단위가 같을 것
2	하나의 수입신고에 대량으로 수입될 것
3	물품 고유번호별 이력관리할 경우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될 것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내 재수출을 전제로 관세감면을 신청한바, 약 97%(약 190,000병 중 약 184,000병)의 용기는 2년 내 재수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MIS 기능이 미흡해 재수출 이행기간이 도래한 용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실제 수출된 용기번호와 다른 용기번호가 재수출 이행보고된 편법행위를 처분청이 적발하기도 했다. 총량관리 중심제를 적용한다면 쟁점물품의 고유번호별로 실제 수출됐는지를 일일이 추적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해당 제안은 「관세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관세청의 고시 개정으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제안의 기대 효과로서 청구법인이 고유번호별로 사후관리함으로써 투입되는 과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사후관리 점검에 따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납세자의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추징 못지않게 추징이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도 병행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Ⅶ. 맺는 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 149,446개 수입 용기 중 123,699개의 용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재수출이 이행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의 선행처분과 관련된 조사내용이 불명확·불충분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국내 이동자료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재수출기간 내 수출됐는지 여부와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동일한 용기 소명내역과 추징대상 용기 목록을 가지고 무려 1년간 18차례의 이메일을 통해 재수출 여부 대사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수출 이행여부를 확인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물품이 있었고 이에 처분청은 종국적 추징처분을 했고 청구법인은 불복을 하게 된 것이다. 불복 배경에는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용기관리시스템(MIS)에서 수입물품의 고유번호별 이력관리를 하지 않은 점 또는 기록 부실이나 왜곡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으로 하여금 수입물품과 재

수출물품과의 대사작업을 되풀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만일 추징 전 대사작업을 통해 소명됐더라면 행정심판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소명이 끝내 되지 않아 추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추징 전의 대사작업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물품이 소명돼 추징대상이 되더라도 추징금액 대비 투입되는 비용이 과도할 수도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 점을 고려해 '재조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취지(2004도1564)를 고려해 고유번호 기준이 아닌, 수입물품과 재수출물품 간의 동일성을 판단기준으로 해 재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쟁점물품과 같이 동일한 규격과 형태를 가짐으로써 HSK가 같은 대량의 물품들은 고유번호별 사후관리제도에서 벗어나 총량관리 사후관리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수입물품과 재수출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별로 상계처리 후 남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 불이행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친환경의 중심 바이오연료의 품목분류

최 민 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Ⅰ. 개요

최근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회사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된다. 항상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였지만, 중국의 과잉 공급, 중동의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됐다.

> "국내 정유사들이 미래 먹거리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료 구매다. SAF는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소·돼지 기름), 팜유 부산물, 바이오 매스 등을 원료로 만드는데 국내에선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이 치킨집 등을 돌며 폐식용유를 수거해 공급하지만, 물량이 적은 데다 값도 비싼 편이다. 팜유 공장이 많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개별 기업이 협상하면 물량 확보와 단가 산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동남아 국가들과 직접 구매협상 테이블에 앉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면 SAF원료를 장기간에 걸쳐 대량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 SAF공장 신증설계획도 밀도 있게 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SAF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SAF 핵심 생산기술인 수소첨가바이오에너지(HVO)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다. HVO 기술을 활용한 SAF 시설을 지으면 투자금액의 최대 15%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받는다."
>
> ※ 출처 : 한경닷컴

이번 호에서는 지속가능한 항공유(SAF)를 포함한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 연료의 품목분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는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식물이나 동물에서 얻은 생물자원을 가공해 만든 연료다. 석유와 비슷하게 쓰이지만, 자연에서 다시 자랄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는 식물이나 미생물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해 얻는 연료이며,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 열에너지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에는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등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됐다. 바이오연료는 자원이 풍부하고 파급 효과가 크며, 환경친화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양을 감소할 수 있고 생성된 에너지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연료 전환 기술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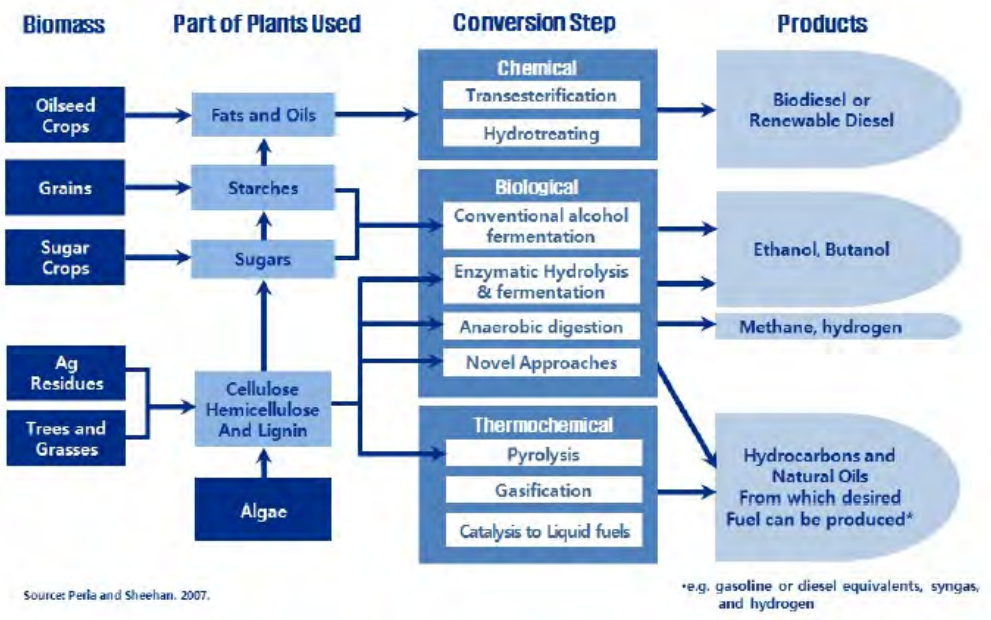

출처 : 한국바이오연료포럼

1.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 만든 경유 대체연료다. 대두유, 유채유,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 생물자원을 원료로 해 만들어지며 주로 자동차, 보일러, 발전기 등의 디젤 연료로 사용한다.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엔진을 크게 개조하지 않고도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이오디젤의 합성에 메탄올과 에탄올은 가장 일반적인 알코올로 에스테르 교환 반응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메탄올은 물리·화학적인 이점과 싼 가격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촉매는 반응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 전환율을 증가시킨다. 염기성 촉매, 산성 촉매, 생 촉매 등의 3가지 종류가 사용 중이며 원료 물질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트랜스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해 생산한다. 다음은 팜유를 이용한 대표적인 바이오디젤의 생산 과정이다.

● 팜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일반적인 생산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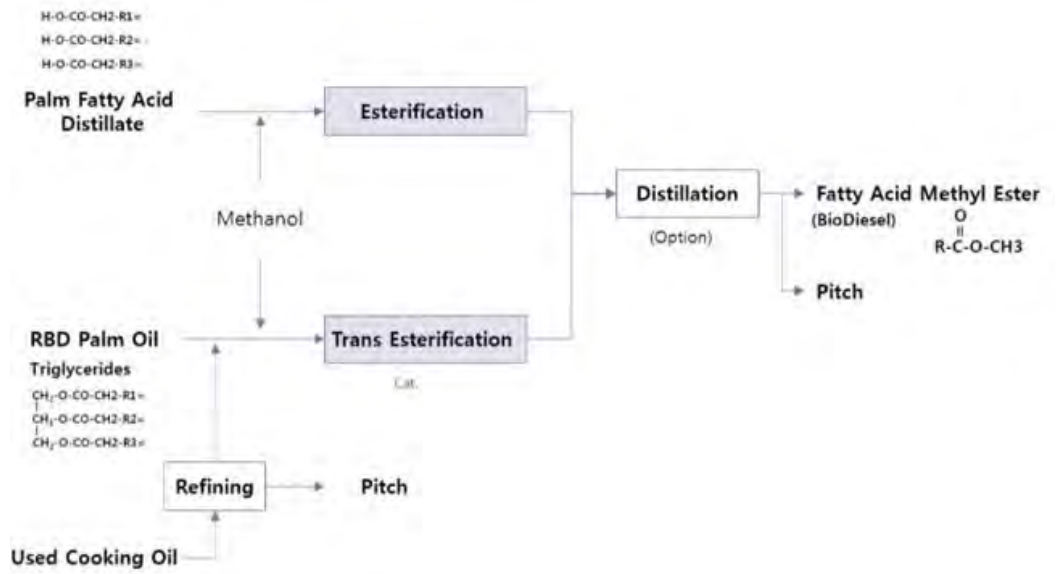

간단히 제조공정을 요약하면 바이오디젤 반제품인 RBD 팜오일(Palm Oil) 또는 정제된 UCO(Used Cooking Oil)에 메탄올을 이용해 에스테르화 반응을 거쳐 친환경 연료인 지방산 메틸에스테르(FAME, Fatty acid methyl ester) 형태의 바이오디젤을 제조한다.

2006년 3월 정부와 정유사 간 바이오디젤 보급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2006년 7월부터 전국 주유소를 통해 바이오디젤이 0.5% 혼합된 자동차용 경유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2007. 12. 31.)해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세 근거 마련을 통해 보급 확대를 유도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 일몰시행(2011. 12. 31.) 후 안정적인 바이오디젤 공급을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2012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2% 이상 혼합의무제도를 도입했다. 자동차용 경유에 사용 중인 바이오디젤의 혼합의무비율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 2021년 7월부터 3.5% 보급 중이며, 매년 0.5% 상향해 2030년 이후 5% 보급 예정이다.

2. 바이오중유

바이오중유는 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동물성지방 등 바이오매스를 정제해 만든 중유 대체연료다. 기존의 석유계 중유와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로 산업용 보일러, 발전소 등에서 기존 설비를 크게 바꾸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이오중유는 일반적으로 전환공정으로 생산한다. 석유제품 중 중유의 생산 과정인 정제나

증류 과정 없이 ① 전처리공정 → ② 처리공정 → ③ 혼합공정을 통해 생산한다. 전처리공정에서는 나트륨, 칼륨, 인 등의 금속분, 원료에 포함된 이물질 등을 필터나 촉매를 통해 제거하고 처리공정에서는 높은 산성의 원료를 중화시키거나 색, 냄새 등을 제거하는 공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혼합공정에서는 처리공정을 거친 원료를 품질기준에 맞게 혼합한다.

● 바이오중유의 생산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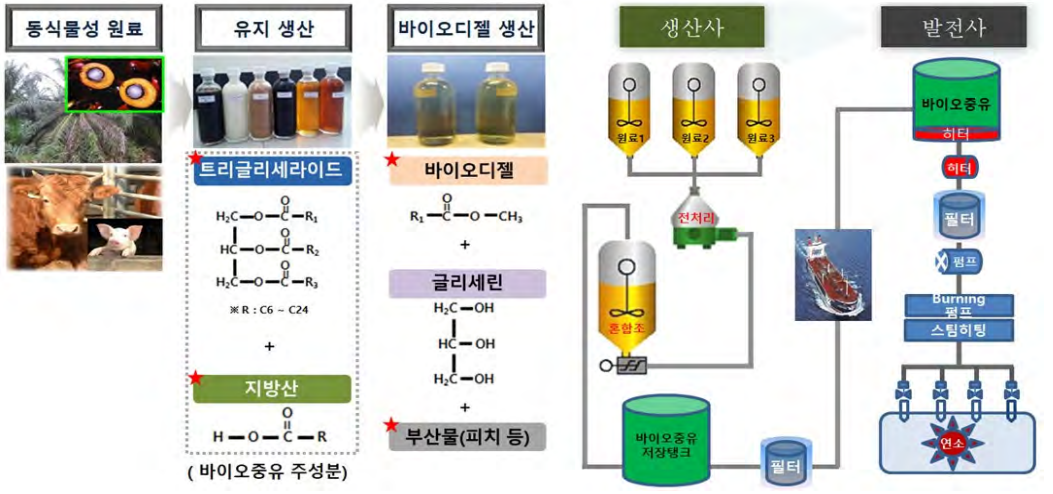

출처 : 한국바이오연료포럼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시행에 따라 발전사는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해 연료로 C중유를 바이오중유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한다. 시범보급사업의 발전사업자 5개사별 발전기 각 1기 지정, 생산업자 21개사 지정발전용 바이오중유의 보급 확대 필요성, 품질·성능 및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보급사업을 추진(2014. 1. ~ 2019. 3. 14.)하고, 실증연구(2014. 1. ~ 2018. 2.) 결과 보급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발전기에 적합한 품질·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그 후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를 위해 전면보급을 시행(2019. 3. 15. ~)하고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관련 법령상 석유대체연료로 명문화했다.

3.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은 옥수수, 사탕수수, 감자, 밀 등과 같은 전분이나 당분이 풍부한 식물자원을 발효시켜 만든 액체 형태의 바이오연료다. 주로 휘발유에 일정비율로 혼합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은 주로 당분이 많은 작물을 발효시켜 알코올을 얻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이 과정은 술을 만드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농도로 정제된다. 이렇게 만든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 차량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혼합 형태로는 휘발유 90%, 에탄올 10% 등이 있다.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요약 비교 ●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Used Cooking oil)를 원료로 해 유지의 트리글리세라이드 구조에 과량의 메탄올과 촉매를 넣어 트랜스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지방산메틸에스테르를 제조하는 과정 * ○○○케미칼의 바이오디젤 생산공정이며, 사용 원료 등 세부 공정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품질 규격상 FAME 함량이 9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참고로 차량 등에 일부 혼입하므로 잔류탄소분 등의 제거를 위해 증류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FAME(Fatty acid methyl ester)의 약어로 지방산의 에스테르화 반응물	바이오중유는 팜유 생산 과정, 바이오디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잔여물을 블렌딩해 금속 제거, 탈수, 탈검, 탈산 후 발전사 규격에 맞춰 생산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품질규격상 총 발열량이 9000kcal/kg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주로 발전사, 선박의 연료로 사용된다. - 참고로 바이오중유는 모노·디·트리 글리세라이드, 지방산 등이 모두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며 그 조성을 따지자면 UCO(Used cooking oil)와 비슷한 형태다.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는 크게 식용과 비식용으로 나눌 수 있다. 식용에는 옥수수, 사탕무, 밀 등이 있고, 비식용에는 옥수숫대, 볏짚, 밀짚 등이 있다.

●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 ●

구분	식용	비식용
종류	전분계, 당분계	농업부산물, 목재 등
특징	식량자원이며, 단순구조로 쉽게 바이오에탄올로 전환	비식량자원으로 복잡한 구조로 인해 전환효율이 낮다
예시	옥수수, 사탕무, 밀, 카사바, 보리 등	볏짚, 옥수숫대, 밀짚, 거대억새, 나무 등

바이오에탄올은 원료에 따라 생산기술에 차이가 있다. 먼저 식용 바이오매스의 경우 당질계와 전분계로 나눌 수 있으며 원료 자체가 당 성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분쇄 과정을 거친 후 바로 발효를 통해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식용 바이오매스의 경우 식용 바이오매스와 다르게 미생물에 의해 거의 분해가 이뤄지지 않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둘러싸고 있어서 이 리그닌으로부터 셀룰로오즈와 헤미셀룰로오즈를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연적이다.

● 바이오 에탄올 생성을 발효공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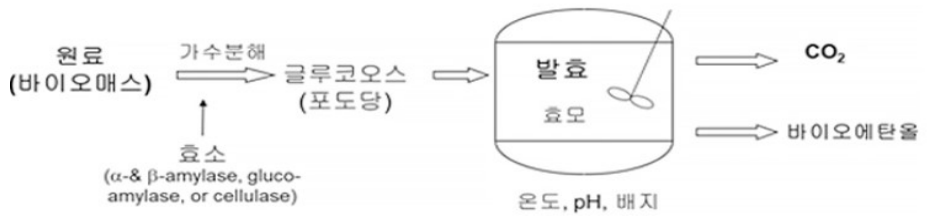

출처 : 한국바이오연료포럼

4. 지속가능항공유(SAF)

항공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 ~ 3%를 차지하며, 유럽에서는 전용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항공업계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쏟는 중이다. SAF는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기름, 사탕수수 등 바이오 대체 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바이오 항공유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만든 전기 기반 연료, 이퓨얼(e-fuel) 등으로 나뉜다. 일반 항공유와 혼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식물성, 동물성 기름을 수소화해서 항공연료로 저장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동물성 지방과 폐식용유가 바이오항공유의 핵심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SAF로 사용되는 연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SAF는 생산공정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SAF는 HEFA(Hydrotreated Esters and Fatty Acids)공정으로 생산된다. HEFA는 공급 원료로 폐식용유, 폐 동물 유지, 식물성 기름 등을 사용한다. 생산공정은 석유 정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입증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원료를 고온·고압에서 수소화 처리하는 방식이며, 성분은 바이오 디젤과 유사하다. SAF 중 생산비용이 가장 낮고 기존 정유시설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생산 과정에 다량의 수소가 필요하고 원료인 폐식용유 등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방식(FT 방식)이 있다. HEFA공정에 비해 원재료 수급이 원활하고 원료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재료에서 금속을 제거하는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고 공정에 정교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로 ATJ(Alcohol-to-Jet)공정은 FT공정과 비슷한 농림 부산물이나 생활폐기물 등을 발효해 알코올을 생성한 후 탈수·수소처리 과정을 거쳐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에탄올을 항공연료로 가공하려면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많은 공급 원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점이다.

마지막으로 PTL(Power-to-Liquid)공정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생시킨 그린수소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한다.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합성가스를 생성한 후 철이나 코발트 같은 촉매와 반응시켜 항공연료와 같은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탄소 포집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므로 탄소 배출량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 다만, 고가의 장비와 복잡한 공정 때문에 화석연료 대비 8배 정도 가격이 높다. PTL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로 포집 비용의 감소가 중요한 요소로 보이나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 SAF의 제조공정 ●

기술명	내용	원료	2030년 가용량	기술 성숙도
HEFA	유지와 지방을 수소화 처리	폐유지, 식물성오일, 팜유, 사용된 조리용 오일	195Mt/년	상용화
FT	가열을 통해 합성가스 생성 후 탄화수소로 전환	농림 부산물, 임업 잔류물, 생활 폐기물	2,290Mt/년	파일럿
ATJ	발효를 통해 알코올 생성 후 탄화수소로 전환	농림 부산물, 임업 잔류물, 생활 폐기물	1,330Mt/년	파일럿
PTL	전기와 CO_2 및 물을 결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로 전환	CO_2, 물, 재생가능 전기	N/A	개발

출처 : EY(Sustainable aviation fuel on the rise)

Ⅲ. 경합세번

바이오중유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디젤, 팜유 부산물, 그리고 바이오중유의 원료 물질 중 산가가 높은 물질, 지속가능한 항공유에 대해 제1522호, 제2710호, 제3823호 또는 제3824호의 품목분류를 검토하겠다.

1. 바이오디젤(Biodiesel)

정제한 폐식용유와 메탄올을 에스테르 결합전이반응시켜 제조한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혼합물의 품목분류

2. 팜유 부산물[Palm Acid Oil(20%)]

CPO(Crude Palm Oil) 제조 공정 중 발생한 여액을 원심분리 후 상층부(Oil 층)를 열처리 및 여과해 얻은 황갈색 점조 페이스트로 용도는 바이오연료의 원료에 대한 품목분류

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팜 열매를 압착 및 착유해 조유(Crude Palm Oil)를 분리하고 남은 여액을 원심분리, 자연침전 후 분리된 상층부(Oil 층)를 열처리, 여과 등을 거친 유리지방산 주성분의 흑색페이스트상의 품목분류

품목번호			품명	세율
1522	00	00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기본 8%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1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9		기타	
		20	등유와 그 조제품	
		2010	등유	기본 3%
		2020	제트 연료유	기본 3%
		2090	기타	기본 5%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1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11	0000	스테아린산	기본 8%
	12	0000	올레인산	기본 8%
	19		기타	
		1000	팔미트산	기본 8%
		9000	기타	기본 8%
	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9090	기타	기본 5%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10	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양허 6.5%
	30	0000	응결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양허 6.5%
	40	0000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양허 6.5%
	50	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양허 6.5%
	60	0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기본 8%
	99	9090	기타	기본 8%
3826	00	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양허 6.5%

Ⅳ. 관련 규정

□ 관세율표 제1522호의 용어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 제1522호 해설서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 기름의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이다. 이는 비누와 윤활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2) 소프 스톡(soap-stock) : 유리(遊離) 지방산을 염기(수산화나트륨)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이며, 이는 조(粗)비누·중성유나 지방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3)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 :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점착성·흑색 덩어리로서 상당히 단단하며 때로는 탄력성이 있고 경유(light petroleum)에는 부분적으로 녹는다.

(4) 울그리스(wool grease)를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 : 이는 외관이 스테아린(stearin) 잔유물과 같으며 그와 동일 용도에 사용한다.

(5) 글리세롤 피치(glycerol pitch) :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며 직물의 완성가공과 종이 방수에 사용한다.

(6) 지방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함유하고 있는 사용한 탈색용 흙

(7) 동물성 왁스·식물성 왁스의 여과 잔유물 : 어느 정도의 왁스를 함유하는 불순물로 구성되어 있다.

□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제2710호 해설서

(B) 비방향족(non-aromatic)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유사한 오일. 이들은 석탄을 저온증류하거나 수소첨가나 그 밖의 방법[예 : 크래킹(cracking)·리포밍(reforming) 등]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이 호는 트리프로필렌(tripropylene)·테트라프로필렌(tetrapropylene)·디이소부틸렌(di-isobutylene)·트리이소부틸렌(tri-isobutylene) 등으로 불리는 혼합 알킬렌(mixed alkylene)을 포함한다. 이들은 불포화 비환식탄화수소류[옥틸렌(octylene)·노닐렌(nonylene)·이들의 동족체와 이성체 등]와 포화 비환식 탄화수소류의 혼합물이다.

이들은 프로필렌·이소부틸렌이나 그 밖의 에틸렌계 탄화수소를 저중합하거나 광물유(鑛物油)를 크래킹(cracking)하여 얻는 특정 물품을 분리[예: 분별증류(fractional distillation]하여 얻는다.

다만, 액체 상태의 폴리올레핀(polyolefin)에 있어서는 섭씨 300°C에서 감압(減壓) 증류법(reduced-pressure distillation method)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101.3kPa)로 환산한 후, 용량이 전 용량의 60% 미만의 것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제39류).

□ 관세율표 제3823호의 용어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제3823호 해설서

(A)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과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에시드유(acid oil)**

공업용 모노카르복시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nification)나 가수분해(hydrolysis)에 의해 제조된다. 고체(포화된)지방산과 액체(불포화)지방산의 분리는 보통 결정화[용제(溶劑 : solvent)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액체 부분은(상관례상 올레산이나 올레인으로 알려진) 소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올레산과 그 밖의 불포화 지방산(예 : 리놀레산이나 리놀렌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체 부분은(상관례상 스테아르산이나 스테아린으로 알려진) 주로 낮은 비율의 불포화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상업적인 스테아린산(스테아린) : 이것은 독특한 냄새를 가진 백색의 고체 물질이다. 이것은 비교적 단단하며 다소 부서지기 쉽고 보통 진주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가루 모양으로 시판된다.

(2) 상업적인 올레산(올레인) : 이것은 독특한 냄새를 가진 무색에서 갈색까지의 유성 액체이다.

(3) 톨유 지방산(TOFA : tall oil fatty acid) : 이것은 주로 올레산과 리놀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톨유(crude tall oil)를 증류하여 얻어지며 지방산을 전 중량의 90% 이상(건조 중량에 의해 계산한다)으로 함유하고 있다.

(4) 증류한 지방산 : 이것은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예 : 야자유·팜유·탤로우(tallow)]를 가수분해(hydrolysis)한 후에 정제공정(증류)을 거쳐서 얻어진다.

(5) 지방산 디스틸레이트 : 이것은 정제공정의 일부로서 수증기의 존재 하에 진공 증류를 함으로 얻어진 지방이나 기름에서 얻는다.

(6) 촉매 산화하여 얻어진 지방산(고분자합성 탄화수소를 원료로 한 것)

(7) 지방이나 기름을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순도(純度) 85% 이상(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의 올레산(제2916호)

(b) 순도(純度) 90% 이상(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의 그 밖의 지방산(일반적으로 제2915호·제2916호·제2918호)

□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제3824호 해설서

위에서 설명한 조건 이외에,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과 화학품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나프텐산(naphthenic acid) … <중략> …

(2) 응결하지 않은 금속탄화물 … <중략> …

(3) 시멘트·모르타르(mortar)나 콘크리트(concrete)용의 조제 첨가제 … <중략> …

(4) 비내화성 모르타르(mortar)와 콘크리트(concrete)
(5) 제2905호의 것 이외의 소르비톨(sorbitol)
… <중략> …
(6) 그 밖의 물질의 혼합물로서 제강공업에서 탈황제로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것.
(7) 배양한 결정(cultured crystal)[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 제외한다]
… <중략> …
(8) 석유술폰산염 … <중략> …
(9) 폴리클로로비페닐(polychlorobiphenyl)(비페닐 염소화유도체의 혼합물)과 염화파라핀
… <중략> …
(1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 상당히 저분자의 것으로 예를 들면, 디-·트리와 테트라(옥시에틸렌) 글리콜의 혼합물이다. … <중략> …
(11) 글리세롤의 모노-·디-·트리- 지방산 에스테르(esters)의 혼합물 : 지방의 유화제(emulsifiers)로 사용

□ 관세율표 제3826호의 용어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제3826호 해설서
바이오디젤(biodiesel)은 다양한 사슬 길이의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물에 섞이지 않으며, 높은 끓는점·낮은 증기압·석유에서 생산된 디젤유와 비슷한 점도를 지닌다)로 이루어져 있다. 바이오디젤은 전형적으로 에스테르 결합전이반응(transesterification)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기름(油 : oil)과 지방(脂 : fat) 상태의 지방산이 촉매를 통해 알코올(보통의 경우 메탄올이나 에탄올)과 반응하여 의도된 에스테르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식물성 기름(油)[예 : 유채씨·대두·종려나무·해바라기·목화씨·야트로파(jatropha)]·동물성 지방(脂)[예 : 라드(lard)·탤로우(tallow)]나 사용한 기름이나 지방[예 : 튀김 기름·재활용 요리용 그리스(grease)]로부터 얻어진다.
바이오디젤은 그 자체로는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으나 석유나 역청(瀝靑)질의 광물로부터 얻어지는 증류 연료(예 : 디젤·등유·난방용 기름)와 혼합될 수 있다. 바이오디젤은 압축 점화식의 내연기관피스톤 엔진·열에너지 생산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를 위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Ⅴ. 품목분류

1. 바이오디젤 : Cooking Oil Methyl Ester

결정 세번	제3826.00-0000호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정제한 폐식용유와 메탄올을 에스테르 결합전이반응시켜 제조한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혼합물의 미황색계 투명 액상

결정 세번	제3826.00-0000호
	ㅇ 용도 - 바이오디젤(차량, 항공기 연료나 난방용 연료로 사용)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3826호에는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 “바이오디젤(biodiesel)은 다양한 사슬 길이의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물에 섞이지 않으며, 높은 끓는점·낮은 증기압·석유에서 생산된 디젤유와 비슷한 점도를 지닌다)로 이루어져 있다. 바이오디젤은 전형적으로 에스테르 결합전이반응(transesterification)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기름(油 : oil)과 지방(脂 : fat) 상태의 지방산이 촉매를 통해 알코올(보통의 경우 메탄올이나 에탄올)과 반응하여 의도된 에스테르를 형성하게 된다. … <중략> … 사용한 기름이나 지방[예 : 튀김 기름·재활용 요리용 그리스(grease)]로부터 얻어진다. … <중략> … 바이오디젤은 압축 점화식의 내연기관피스톤 엔진·열에너지 생산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를 위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바이오디젤이므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따라 제3826.00-0000호에 분류함.

2. 팜유 부산물[Palm Acid Oil(20%)]

결정 세번	제3824.99-9090호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CPO(Crude Palm Oil) 제조 공정 중 발생한 여액을 원심분리 후 상층부(Oil 층)를 열처리 및 여과해 얻은 황갈색 점조 페이스트** - 구성 성분 : 유리지방산 20.76%, Glycerides[T(60%) + D(15%) + M(1.1%)] 76.03 %, 수분 0.1%, 기타 불순물 2.23% ㅇ 용도 **- 바이오연료의 원료** - 제조공정 : Recovered oil → 열처리(60 - 70℃) → (상등액) → FILTER → (여액) → PAO → (산가, 수분, 불순물 실험 후) 출하바이오디젤(차량, 항공기 연료나 난방용 연료로 사용)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1522호에는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는데 본 품은 지방성 물질인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잔유물에 열처리와 여과만 거친 것으로 조제품으로의 가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본 물품은 **팜유제조 공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원심분리에 의해 오일층만 회수한 것으로 제1522호의 잔유물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

결정 세번	제3824.99-9090호
	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과 화학품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중략> … **(11) 글리세롤의 모노- ·디- ·트리- 지방산에스테르(esters)의 혼합물 : 지방의 유화제(emulsifiers)로 사용"을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글리세롤의 지방산 에스테르와 지방산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봐「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 Palm Acid Oil

결정 세번	제3823.19-9000호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팜 열매를 압착 및 착유해 조유(Crude Palm Oil)를 분리하고 남은 여액을 원심분리, 자연침전 후 분리된 상층부(Oil 층)를 열처리, 여과 등을 거친 유리지방산 주성분의 흑색계 고점조 페이스트 - 산가 : 약 167.1mg KOH/g - 유리지방산(as Palmitic acid) : 약 76.3% - 유리지방산 조성(팔미틴산 44.7%, 스테아린산 4.5%, 올레산 40.3%) ㅇ 제조공정 팜 열매를 압착 및 착유해 Nut와 Oil 부분으로 분리 → 분리된 Oil(Oil 66%, 물 24%, 고형상의 물질 10%)에 물 혼합 → 원심분리 → 고형물질 제거 → 자연침강 → 물(하층부)과 Oil(상층부)로 분리 → 분리한 물(하층부)은 원심분리후 고형이물질 제거 후 집유조에 저장→ 자연침전 분리 → Oil을 Collecting → Heating(60 ~ 70℃), 자연침전, 여과 → PAO(Palm acid oil) 분리한 Oil(상층부)은 원심분리 후 Crude palm oil(CPO) 획득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3823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3.1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nification)나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 제조된다. (7) 지방이나 기름을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비교적 유리 지방산(free fatty acid)의 함유량이 많은 기름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기름을 정제할 때 얻어지는 소우프스톡(soap stock)을 무기산으로 분해하여 조제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조유(CPO)를 분리하고 남은 부분을 원심분리, 자연침전 등으로 오일 등을 분리한 후, 열처리, 여과 등을 통해 얻어진 흑색계 고점조 페이스트로서 조유(Crude oil)를 가지고 정제 과정에 생성된 물품이 아니므로 "지방이나 기름을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리지방산(약 76.3%) 주성분으로 구성된 흑색계 고점조 페이스트로서 기타 지방산의 물품이므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3.19-9000호에 분류함.

4. 기타 화학제제(Other chemical preparations) ;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

결정 세번	제3824.99-9090호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바이오디젤 생산공정 후 남은 잔재물(Bio diesel pitch)을 여과한 것에 Acid oil을 글리세린과 에스테르화 공정을 거쳐 얻은 것을 혼합한 암갈색계 점조액상 - 성분 : Glycerides[T(32.59%) + D(21.13%) + M(3.83%)] 57.55%, Fatty Acid Methyl Ester 41.42%, FFA 0.81%, Water 0.07% 등 ㅇ 용도 - 바이오 선박 연료용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면서, "(B) 화학품과 조제화학품·그 밖의 조제품 : (11) 글리세롤의 모노-·디-·트리- 지방산 에스테르(esters)의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7호에서 "제3826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알킬에스테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바이오디젤 생산공정 후 남은 잔재물을 여과한 것에 Acid oil을 글리세린과 에스테르화 공정을 거쳐 얻은 것을 혼합해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제한 것이므로 제1522호의 잔유물로 볼 수 없으며, 제38류 주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이오디젤'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5. 지속가능항공연료(SAF)

결정 세번	제2710.19-2020호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감압경유(Vacuum gas oil) 등과 불순물을 제거한 정제폐식용유를 혼합해 UC공정(중질유수첨분해공정)을 통해 촉매 존재 하에 수소첨가해 만든 무색 투명 액상의 제트 연료유(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 및 제출된 자료에 한함) ㅇ 용도 - 항공연료유로 사용

결정 세번	제2710.19-2020호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같은 호 HS 해설서에 "(B) 비방향족(non-aromatic)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유사한 오일. 이들은 석탄을 저온증류하거나 수소첨가나 그 밖의 방법[예 : 크래킹(cracking)·리포밍(reforming) 등]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설명과 같이 제조된 제트 연료유이므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10.19-2020호에 분류함.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플라스틱 사무용품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사무용품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포스트잇'이다. 이젠 그냥 메모지가 아니라 사무용품이나 문구류에서 빠질 수 없는 고유명사처럼 인식된다.

포스트잇은 스펜서 퍼거슨 실버 3세라는 화학자가 발명했다. 그는 1960년대 중반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3M에 입사했고 1968년에 항공기 제작에 쓸 강한 접착제 개발에 몰두했다. 당시 스펜서 실버 박사는 '실수'로 접착력이 약하고 끈적이지 않는 물질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바로 '포스트잇' 탄생의 초석이 된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은 처음부터 의도한 발명품이 아닌, 실수에서 나온 아이디어 상품이다. 실버 박사는 이후 몇 년간 회사에서 자신이 개발한 접착제를 홍보했는데, 이후 테이프 사업부의 화학 기술자인 아트 프라이와 만나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아트 프라이는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찬송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종이를 책갈피 삼아 끼워 넣었던 것. 그런데 매번 그 종이가 빠지다보니 원하는 페이지를 찾느라 고생하곤 했다. 이에 스펜서 실버 박사의 '실패한' 접착제에 메모지를 붙여봤고 결국 신제품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포스트잇은 처음에는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 사무용품 등으로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대량 유통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종이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도 만들어지며, 색깔, 형태 등이 매우 다양화됐다.

오늘은 점착성 있는 플라스틱 시트로 제조된 포스트잇에 관한 품목분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반투명 말풍선 모양의 플라스틱제 필름 뒷면 일부분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메모지 200매를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에 해당하는 제3919.90-0000호로 신고했다.

먼저 제3919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다양한 종류의 표면에 접착할 수는 있으나 영구적인 접착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메모지에 부분적으로 접착성을 추가한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메모지에 있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본 물품을 제3919호에 분류하지 않았다.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10호에 '사무용품이나 학용품'을 세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사무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10-9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OTHER SELF-ADHESIVE	3919.90-0000 (FCN1 0%)	Office supplies of plastics	3926.10-9000 (FCN1 0%)

산불 진화에 인공강우 도입은?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올해 초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를 뒤흔든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거의 한 달 만에 진화가 완료됐지만, 최대 1,640억 달러(약 237조 원)에 달하는 최악의 경제 피해를 남긴 화재로 기록됐다. 인명피해만 해도 2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3월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처음 산불이 발생한 후 149시간 35분 만에 경북 5개 시군의 산불을 진화했다. 산불 피해 규모는 여의도 156배 면적, 축구장 6만 3,263개에 달하며, 국내 역대 산불 피해 중 가장 크다.

이번 대형 산불을 계기로 인공강우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국 쓰촨성 이빈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중국 당국은 인공강우를 만드는 대형 드론을 투입했다. 드론은 산불 상공에서 수증기가 뭉치게 하는 구름 씨앗인 촉매제를 뿌렸고, 1시간 만에 비가 내려 큰 불길을 잡았다고 한다. 드론 대신 지상에서 로켓을 이용하기도 했다. 2019년 쓰촨성 산불 때는 로켓 6기에 인공강우 촉매제를 실어 쏘아 올렸는데, 인공강우의 핵심은 물방울 생성을 촉진하는 요오드화은 같은 촉매제를 수분이 있는 구름까지 보낸다는 것이다. 드론이나 항공기, 로켓 등을 촉매제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최근에는 지상에서 촉매제를 태워 공중으로 보내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다.

인공강우(人工降雨, rainmaking)란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을 말한다. 기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 자체로 상징적인 일이며,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농업 등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인공강우를 연구 및 실험 중이다.

관세율표에서 인공강우의 핵심 성분인 요오드화은(AgI)은 촉매(catalyst)의 일종으로 제2843호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에 분류될 것이다.

제2843호 해설서에서는 '(B)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로 설명하고 있다. 또 요오드화은이 다른 성분과 조제된 경우라면 관세율표 제3815호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될 것이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26호_2025.4.14.

최신개정법령

공고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

입법예고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입안계획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무역위위원회공고 제2025-7호, 2025.4.9.)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1. 일시 : 2025. 5. 22.(목) 14:00~16:00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5. 4. 23.(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용지 10매 이내 세로작성)하여 문서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ljh773@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98호, 2025.4.9.)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효성화학㈜, ㈜화승케미칼이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효성화확㈜, ㈜화승케미칼

나. 요청일자 : 2025년 2월 3일

다. 요청대상물품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기획재정부령 제992호(2023.5.8)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물품 중 공급자가 캉훼이(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또는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인 것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이후 상황변동으로 인해 기존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및 필요한 조치 사항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캉훼이(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5년 4월 9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4. 기타 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여할 것을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044-203-3865)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세종시 도움6로 42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3865, (FAX) 044-203-4813	덤핑률 조사

입법예고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61호, 2024.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61호, 2024.12.4.)

2. 개정이유

□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시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기타 관세환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환급신청인은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를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야함을 명확화(제13조, 제14조)

* 고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등

○ 환급신청인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사용 입증책임이 환급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화(제13조)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 기타 개선사항

○ 별표 1, 2 및 고세율원재료 품목의 고시 적용 순서 명확화(제16조)

○ 2025 HSK 개정사항을 별표에 반영*([별표 1], [별표 2], [별표 3])

* HSK 3824.99-9053호(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등 14개 품목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제5조, 제7조, 제9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4. 시행일자 : 2025. 00. 0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무관(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25. 4. 3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deawonbang@korea.kr
- 팩스 : 042-481-786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90호, 2025.4.11.)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내 등급판정 축산물의 수출 확대 및 수출된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서식을 추가하고,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 이외에 돼지, 계란·닭·오리, 꿀 품목에 대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제2조 및 제6조)

나.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timetostart@korea.kr
- 주소 :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2-59호, 2022.12.1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관세법」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4항 및 시행령 제288조 제7항 개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변경·갱신업무 위탁을 위한 절차 마련 필요

□ 「관세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제1항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의무 명시화

□ 일선세관 건의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변경·갱신업무 위탁 절차 마련

-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요건, 절차
- ㅇ 대행기관 신청인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평가기준 마련, 지정 취소사유, 업무현황 보고 등 의무사항 명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 2년간 보관의무 명시

□ 일선세관 건의사항 반영

- ㅇ 행정제재 대상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50%이내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관세청장 → 세관장)

  ※ 화물운송주선업자중 관세청장 이상 표창자 희소 및 일선세관 업무협조 유도

- ㅇ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동 고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및 청문절차 생략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심의 및 청문절차 생략

-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의견 진술절차 규정 삭제, 행정절차법 준용 명시
-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증 양식 변경(최초등록일자, 갱신신고기한, 변동신고 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규정 명시)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위반횟수별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확화

※ 1차~4차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국민권익위 의결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2.), 인천공항세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25.2.) 반영하여 개정

3. 시행일자 : 2025. 4.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당자 : 강승현 사무관(042-481-7904), 윤상우 주무관(042-481-1142)

○ 제출기한 : 2025. 4. 30.

○ 제출방법

- 전자메일 : customsyoun@korea.kr
- 팩스 : 042-481-782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2025년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